

2013 춘계(통산 15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 일시 : 2013. 6. 1.(토) 13:00 - 18:3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201호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후원 : 법무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 행사 프로그램 ● ●

시간	세 부 내 용
13:30-14:00	○ 식전 등록 및 입장
1부 : 개회식 및 기조발제	<p>사회: 조진우(본 학회 사무국장, 한국도로공사)</p> <p>○ 개회선언사회자</p> <p>○ 국민의례다같이</p> <p>○ 개회인사 및 내빈소개박인현 회장(대구교대)</p> <p>○ 축사문무일(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p>
14:00-14:50	<p>[기조 발제]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청소년 인권 및 준법교육</p> <p>발표: 이덕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p>
14:50-15:00	휴 식
2부 : 주제 발표 및 토론	<p>사회: 박용조(본 학회 부회장, 진주교대)</p> <p>[주제 1]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p> <p>발표 : 정상우(인하대)</p> <p>토론 : 송성민(서울대 강사), 이종근(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선(광주 첨단고)</p> <p>[주제 2]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과정 실태와 개선 방안</p> <p>발표 : 허종렬(서울교대), 정필운(한국교원대)</p> <p>토론 : 권태호(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성위석(경북대) 전제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p> <p>[주제 3] 헌법의 가치와 정신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 수업 실천</p> <p>발표 : 이수경(서울 휘경공고)</p> <p>토론 : 이대성(고양 백신고), 김자영(서울대 강사)</p>
3부 : 폐회식 및 만찬	<p>사회: 조진우(본 학회 사무국장, 한국도로공사)</p> <p>[공지사항]사회자</p> <p>[폐회선언]박인현(본 학회 회장, 대구교대)</p> <p>* 만찬의 시간(장소: 두부촌)다같이</p>
18:00-20:00	

● ● 목 차 ● ●

< 인사 말씀 >

인사말씀.....박인현

< 기조 발제 >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청소년 인권 및
준법교육이덕연(1)

< 주제 발표 >

[주제 발표 1]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정상우(13)

[주제 발표 2]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과정 실태와
개선 방안허종렬·정필운(37)

[주제 발표 3] 헌법의 가치와 정신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 수업 실천
.....이수경(95)

인사 말씀

평소 법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학회로서는 통산 제15차 학술발표회가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준법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상은 개정 교육과정 상에 헌법 관련 내용이 축소되었고, 수업 실천면에서도 여러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교육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어떻게 잘 담아내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조 발제를 맡아 주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덕연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학회의 활동에 대해 평소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문무일 국장님과 본 학회의 학술대회 때마다 아낌없는 재정적 후원을 해 주시는 「재단법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국민운동 본부」 오주언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정필운 학술이사님과 학회 사무국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박인현 드림

•• 기초 발제 ••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청소년 인권 및 준법교육**

[기조 발제]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청소년 인권 및 준법교육

이 덕 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1. 헌법과제로서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
2.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의 관점에서 본 민족(공동체)과 헌법공동체
3. '일통지정'(一統之政)의 준거 및 지향점으로서 '헌법적 애국심'

1. 헌법과제로서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

헌법을 '이념과 원리 및 제도의 통일된 복합체'라고 한다면, 헌법적 정체성의 핵심은 이 복합체를 관통하는 가치질서에 대한 공감이다. 이는 곧 우리 공동체의 가치적 향상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고 가치상향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적 토대이고 자산이다. 헌법적 정체성은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는 환경에 따른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면¹⁾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우리 헌법규범과 역사적 경험이 '진적'(澱積)²⁾되어 형성된 집단적인 문화적 기억과 그 속 내재된 진보의 동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1) G. J. Jacobsohn, *Constitutional Identity*, Harvard Univ. Press, 2010, 348면.

2) 이 개념에 관해서는 리쩌허우(李澤厚), 황희경(譯), *역사본체론*, 들녘, 2004, 162-163면.

4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은 우선 헌법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표는 헌법질서와 헌법적 정체성의 주체인 시민(citizen)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체계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헌정체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호의 의지까지 갖추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³⁾. 그 핵심은 W. F. Murphy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하는 시민’(creating citizen), 즉 “상호의존의 현실 및 상호존중의 윤리적, 규범적 요청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공유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다⁴⁾.

교육내용의 본질과 성격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교육은 어린아이에 대한 언어교육과 유사하다. 헌법적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헌법교육은 정치, 역사 및 사회, 정신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접근의 관점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언어교육이다.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을 어린이가 말을 배워나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부정과 비유, 그리고 환유를 헌법적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헌법적 담론’(constitutional discourse)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M. Rosenfeld⁵⁾의 해명은 예사롭지 아니하다. 청소년들이 자긍심과 비판정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관용의 태도를 갖춘 민주시민으로 커나가는 것은 처음으로 접하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언어’(constitutional langue), 즉 헌법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기호의 형식체계와 문법을 습득하고, 이를 공용어로 하여 기호와 문법체계를 활용하는 방식, 즉 ‘헌법적 술화’(constitutional parole)의 방식을 익히는 과정과 다를 것이 없다.⁶⁾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인격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3) 현행 「국적법」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생계능력과 함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조 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질서에 대한 공감과 이해, 즉 ‘헌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W. F. Murphy, Constitutional Democracy, 2007, 342면.

5) M. Rosenfeld, The Identity of the Constitutional Subject, Routledge, 2010, 37-69면.

6) 이에 관해서는 H. Schweber, The Language of Liberal Constitutionalism, Cambridge, 2007, 139면 이하. ‘langue’와 ‘parole’의 관계를 ‘법적 규칙’(legal rules)과 ‘법적 주장’(legal arguments)의 관계로 대비하는 D. Kennedy의 해명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직 하다. A Semiotics of Critique, 22 Cardozo Law Rev.(2002), 1178면.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에 합체되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일종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체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언어의 상징적 질서를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신의 최초의 정체성을 타인, 말하자면 부모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규칙은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점에서 어린아이에게 이 관계맺음은 일종의 소외이다⁷⁾. 이 소외를 극복하고, 옳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언어를 '재전유'(再專有: reappropriation)함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재전유'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어(Sozialekt), 특히 "사랑과 법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연대"⁸⁾를 세 축으로 하는 개인 간의 상호인정의 태도와 연관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상호존중'의 언어를 습득시키는 것이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천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명제를 제시하는 자유와 민주적 법치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우치게 하는 민주시민교육,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은 (헌)법언어공동체인 '우리' 속의 '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자기교육'이고 '자기도야'이다⁹⁾. 그 요체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서 의미를 함께 탐색해나가는 '대화'이다.¹⁰⁾ 말하자면 '헌법의 언어'를 먼저 체득한 기성세대의 시민이 상시적으로 자기반성을 계속해 나가면서,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고 격려하며 과잉도, 과소도 아닌 적절한 교육과 '자유'의 언어'로 생각하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담론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사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마당에 "신선한 씨앗"¹¹⁾을 뿌리는 것이다.

7) Rosenfeld, 앞의 책, 38면.

8) A. Honneth, 문성훈/이현재(역), 2011, 인정투쟁, 특히 313-327면.

9) H.G. Gadamer, 손승남(역), 교육은 자기교육이다, 동문선, 2004, 8-12면.

10) "타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상호존중의 자격이 있는 개인인 우리 자신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긍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로운 대화'(liberal conversation)의 의의와 효용을 강조하는 B. A. Ackerman의 인식은 일반적인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청소년교육의 맥락에서 더욱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Yale Univ. Press, 1980, 374면. 특히 "Why Dialogue?", The Journal of Philosophy, 86, 1989, 16면 이하 참조.

11) L. Wittgenstein, 이영철(역), 문화와 가치, 책세상, 2006. 29면.

6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Gladstone의 말대로 “사람을 자유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자유뿐이다.”¹²⁾

2.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의 관점에서 본 민족(공동체)과 헌법공동체

민족공동체와 헌법공동체는 중첩될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로 형성될 수 있으나 그 정체성의 토대와 본질은 구별된다. 민족공동체가 혈연과 언어를 비롯하여 공통된 ‘과거의 집단적인 기억’과 그 속에 침적된 정신문화적 유산을 요소로 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언어’ 속에 체화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준거로 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가치공감대, 즉 헌법적 정체성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헌법적 정체성의 본질을 이른바 ‘가치변환적 가치’(transvaluate value)의 형성, 즉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기존의 가치관과 태도를 반성하고 재평가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로 이해하는 Rosenfeld는 ‘동일성’(sameness) 또는 ‘자아’(selfhood)를 토대로 하여 구성되어 나가는 헌법적 정체성이 일면 미래를 향한 ‘동일성’의 기획과, 타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하는 ‘자아’의 이미지 상호간의 역동적인 교차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¹³⁾. 이에 따르면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대와 기획,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이에 터잡은 ‘자아’는 경우에 따라서 상보적일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⁴⁾ 후자의 맥락에서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 또는 ‘민족적 정체성’의 함의와 양자 간의 역기능적 영향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에서는 물론이 되, 보편적인 시민정치교육,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언어교육에서

12) BVerfGE 33, 86에서 재인용.

13) M. Rosenfeld, Constitutional Identity, in: M. Rosenfeld/A. Sajo(ed.),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2012, 757면.

14) Rosenfeld, 위의 책, 757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 H. Carr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헌법적 정체성은 '과거와 현재간의 대화' 속에서 형성되어 나간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과 집단의 교차적인 관계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자아의 동일성을 매개로 하여 '미래의 기획'에 의해서 과거를 다시 기억 및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의 자아를 구체적으로 반성 및 재평가하며, 그 결과가 다시 미래의 기획에 반영되는 상시적이고 통시적이며, 역동적인 환류(feed-back)의 과정 속에서 발전된다. 결국 이 환류과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 헌법적 정체성의 미래기획과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의 성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면 민족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의 요청은 절실하다.

'민족이 민족주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가 민족을 낳았다'라는 서구적인 시각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우리 민족공동체의 역사문화적 조건과 환경, 특히 제국주의의 모태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이데올로기, 즉 민족자결주의의 역할, 그리고 분단체제 하에서 민족공동체가 분열된 상태에서의 참혹한 전쟁경험,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와 민주화의 경험 등의 역사적 이력은 독특하다. 하지만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¹⁵⁾로 보면서 근대 이후 극심한 실질적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평적인 동료의식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그 정신문화적 근원고하 효용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시대의 화두인 극단적인 '사회양극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달리 표현한다면, 이러한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소외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회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연대의식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주된 토대가 바로 민족주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의 상당한 정치사회 및 문화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민족주의인가?"¹⁶⁾라는 반어적 질문을 통해 제기

15) 윤형숙(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원저: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1991).

16) 광준혁/조홍식(편),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한길사, 2012.

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하는 고민거리, 예컨대 “다양성이 거부되고, 일방적 교화를 반복하는 한국사회의 갈등”의 근원이 민족주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의 공화주의적 덕성, 즉 “시민적 자유와 책임을 통해 구성해온 도덕적, 시민적 품위”에 대한 관심과 반성에 민족주의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의 문제제기는¹⁷⁾ 곱씹어봄직 하다. 요컨대,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¹⁸⁾의 명제와 같은 맥락에서 ‘민족주의 없는 헌법적 정체성’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3. ‘일통지정’(一統之政)¹⁹⁾의 준거 및 지향점으로서 ‘헌법적 애국심’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 제기는,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적 기대와 유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J. Habermas가 민족주의의 대안담론으로 제시한 이른바 ‘헌법적 애국심’(constitutional patriotism)과 적어도 문제인식의 구조, 특히 출발점과 지향점을 공유한다.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서 민족이 개별 국가의 정체성의 기본단위로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정체성과 정치적 충성심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의 지평 속에서 적어도 ‘우연을 운명으로 만들어 왔던 마술’²⁰⁾인 감정적이고 폐쇄적인 또한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한 통합의 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탈민족(주의)의 새로운 연대의 근원을 모색하는 시도 속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헌법적 애국심’의 명제이기 때문이다²¹⁾. 그 핵심은 애국심의 근거를 더 이상 혈연이나 언어 및 영

17) 위의 책, 프롤로그, 6면.

18) 위의 책, 프롤로그, 12면.

19) 위대한 사상가 해강 최한기 선생은 「人政」(1860)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통솔함(爲邦御家)에 있어서 일관된 어떤 로직(logic)이 있어야 한다는 뜻”의 ‘일통지정’을 사람을 헤아리고(測人), 가르치고(敎人), 뽑고(選人), 그리고 쓰는데 있어서(用人) 기본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시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의 맥락에서도 그대로 유용하다. 이에 관해서는 김용욱, 해강 최한기와 유교, 통나무, 2004, 14-17면.

20) 윤형숙(역), 앞의 책, 32면.

토의 공유성, 기타 문화적 습속과 유산과 같은 감성적인 민족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포용과 타협을 요소로 하는 민주적인 정치문화와 헌법의 기본이념, 즉 헌법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와 공유에서 찾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²²⁾.

담론의 조건과 환경이 다른 Habermas의 '공론장이론'과 '헌법적 애국심'이 실질적인 가치적 준거에 대한 합의보다는 절차에 대한 합의를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정치한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민족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주목한 Habermas의 기본적인 문제인식, 그리고 민족문화들 간의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을 토대로 하는 '탈민족적 민주주의'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단일언어와 단일혈통을 중심축으로 하는 우리의 특유한 민족주의담론과, 민족의 명제가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명분, 말하자면 "애국이념이 체화된 신성한 개념"²³⁾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해야 한다.

권위주의시대에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조작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전체 또는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신화화된 절대적인 명분으로서 민족주의라면 그것이 향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의 토대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념적 차원에서 극복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문제는 그것에 내재된 한계를 직시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대상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기대하고, 또한 스스로 제시해야 하는 헌법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작용되는 민족

21) 홍승현,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심", 곽준혁/조홍식(편), 앞의 책, 321면.

22) 이에 관해서는 위의 책, 303-305면. H.-U. Wehler가 사회의 내부적, 외교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민족주의의 '근본적인 맹점'으로 지적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통합과 정치적 정당화를 돕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민족주의를 대신하여 현대 국가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적 입헌주의', '법치국가',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조절되는 경제성장능력'을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헌정적 애국심'은 이 프로그램들의 집합개념에 다름이 아니다. 이용일(역), 허구의 민족주의, 푸른역사, 2009, 168-178면.

23) 윤형숙, 앞의 책, 저자해설, 280면.

1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문제이다.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또는 적어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완화하는 담론에서의 관건은 인식의 불일치가 아니라 인식의 상위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있다고 보는 Ch. L. Stevenson의 윤리학적 담론을 원용하여 말하자면²⁴⁾,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은 의견불일치의 근원을 탐색하는 작업인 동시에 의견의 불일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에 의해 선점 또는 포착되어 있는 담론체제를 해체하고, 민족주의와 유력한 대안담론의 하나인 ‘헌법적 애국심’의 정신적, 철학적 담론의 준거로서의 효용과 한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상론을 생략한 채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민족 또는 민족주의가 청소년에 대한 ‘계몽의 수사’로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얼마나 유효한지 적어도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민족’이라는 이념주의(ideologism)적 논리로 ‘우리는 하나’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쉬운 만큼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은 그 논리를 현실적인 문제의식 속에 체화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태도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안모색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특히 공감의 토대로서 민족을 상상해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선택가능한 이념과 체제 및 제도의 대안들에 대한 실증적인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는 식의 방법으로 그에 수반되는 의무와 부담의 수인에 대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설득의 수사(修辭)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수사를 담아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헌법공동체의 담론으로서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 즉 ‘헌법적 애국심’의 효용을 가늠하는 것이다.

다만, 굳이 재확인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의 요청이 정치적, 역사문화적 수사로서 민족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극심한 고통과 비애의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한(恨)과 정(情)의 감성이 특유한 우리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의 본체는 부정과

24) “The Nature of Ethical Disagreement”. in: R. Schafer-Landau(ed.), *Metaethics*, Vol. III, 2008, 304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해방과 진보의 인자를 내포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보전해 나가야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과 극복의 당위성, 그리고 그 지향점은 바로 이러한 정신문화적 요청, 즉 민족주의의 정신과 역사문화적 토대 중에 살려나가야 할 순기능적 가능성의 부분과,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역기능의 부분을 가려내는 것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특히 언제 어떻게 맞게 될지 모르는 한국통일의 과정에서 또한 통일한국에서 남한 시민에게 큰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게 될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이러한 희생과 부담의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정신적, 사회심리적 준거, 즉 충분한 양적, 질적 크기가 담보되는 애국심의 토대로서 민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²⁵⁾.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기본의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탈북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특히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수준과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책론의 차원에서 관심은 '의견의 불일치' 자체보다는 '의견의 불일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태도에 대한 인식의 상위'에 모아져야 한다. 민족주의에 앞서서 또는 적어도 절제된 민족주의와 함께 '헌법적 애국심'을 정신적, 철학적 토대로 가다듬어 나가는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정치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25) 이러한 점에서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1 통일의식조사'(2012년 9월 26일)의 결과는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39-158면. 전체적으로 남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급속하게 식어가는 경향을 드러낸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은 전체적으로 2008년 63.8%에서 올해 53.7%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 53.3%에서 40.8%로 급락한 점이 주목된다.

•• 주제 발표 1 ••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주제 발표 1]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정 상 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I. 서론
- II. 헌법교육의 필요성
- III. 헌법교육의 방향성
- IV. 결론
- * 참고 문헌

I. 서론

이 글은 헌법교육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법교육과 헌법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헌법교육이 법교육의 일부로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법의 분류상, 그리고 중등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체계상 헌법교육이 법교육의 일부임은 옳지만, 헌법의 최고규범이라는 특성상 헌법이 단순히 법교육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개인생활과 법이나 사회생활과 법, 범죄와 형벌 등 다른 법교육 영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즉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헌재 1989. 9. 8. 88헌가 6)라고 헌법재판소도 밝혔듯이, 헌법교육은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갖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6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그렇다면 헌법교육의 필요성이란 법교육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민주시민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헌법이 표상하는 자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헌법교육의 1차적 목적인데 이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진다고 하겠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을 통한 헌법의 보호는 헌법적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의 보호와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이 글은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헌법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헌법교육의 내용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측면보다 헌법 가치의 교육과, 생활에서 구현되는 헌법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종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는 공통적으로, 헌법의 필요성, 헌법이 형성된 역사, 헌법의 목적, 헌법의 가치, 헌법적 정의, 헌법의 이념에 대한 이해 없이 헌법의 지적 내용과 헌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통치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의식의 양성을 통해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을 키워야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헌법을 실천하고 수호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II. 헌법교육의 필요성

1. 헌법의 의의와 헌법교육의 필요성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존속 유지시키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창설하고 그 국가는 헌법을 통해 존속할 수 있게 된다. 헌법은 권력세계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의 메커니즘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영역에서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설계도에 해당한다(정종섭, 2013, pp.19-20). 이러한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 즉 약속으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약속에 해당하는 헌법을 구성원인 개개인이 학습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헌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출생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헌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된다.

헌법은 여러 가지 특성과 기능을 갖게 되는데(성낙인, 2013, pp.27-31; 정종섭, 2013, pp.29-38), 법학교육에서는 사실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교육에서는 시민교육으로서 갖는 의의에 따라 헌법의 의의에서 도출되는 헌법의 최고성과 생활규범성, 헌법의 사회통합적 기능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학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헌법 조문의 해석 능력, 헌법체계에 대한 이해, 헌법소송 수행 능력 등 직업전문교육이 강조되지만(김선택, 2005), 법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서 헌법의 전술한 특징과 기능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헌법은 최고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체계이다. 이러한 최고규범성은 형식상적으로 법질서상의 최고성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가치로서의 최고성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비록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의 헌법준중의무와 헌법준수선서, 위헌법률심사제, 위헌명령심사제 등은 헌법이 국법질서상 최고의 규범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성낙인, 2013, p.30).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규정과 기본권에 대한 보장인 권리장전을 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정의, 자유, 평등, 공동체의 유지 등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는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헌법재판권에 의해서도 왜곡되거나 부정될 수 없고 국민 개개인도 국가의 존속과 각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종섭, 2013).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국가적 설계이다.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의지가 반영된 최고의사결정이다. 국가의 기본틀

1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은 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헌법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자기보장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의 세대에 대한 헌법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이지만 그 특성상 세세한 사항까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호되기 위한 골격만을 합의하는 최소한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 된다.

헌법은 생활규범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실현되고 발전된다(허영, 2009, p.28). 헌법은 정치나 인권 보호 이외에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일상의 계약, 교육, 가족관계, 사회보장 등 전 생활영역에 걸친 생활규범이다.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실제 생활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실제의 생활을 일정한 가치로 이끌어 준다. 헌법교육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은 구성원들이 합의한 삶의 일정한 질서와 틀 내에서 자신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호 존중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헌법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일정한 가치지향과 질서로 나타나는 최고법인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생활에 동화되고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만든다. 나아가 헌법은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되게 하고, 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한다(정종섭, 2013, p.37). 헌법에 투영되는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가치지향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고 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당시의 보편적 이념과 정의관념, 가치의 표현이다. 이러한 가치는 시대정신의 헌법적 구현이면서 입헌주의의 차원에서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를 무시할 수 없고 다수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르지 않게 방지한다. 따라서 헌법은 우리 사회가 통합되고 유지되는데 가장 안정적인 기준이 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을 헌법에서 찾는 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다른 기준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타당하다(강경선, 2012, p.306). 아울러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담고 있기에 헌법 내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강경선, 2012, pp.307-308), 사회의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헌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미래세대도 헌법의 틀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헌법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헌법교육의 위상

1) 목적에 있어서 법교육과 헌법교육

1978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교육법(The Law-related education Act)은 법교육을 ‘일반인에게 법, 법절차, 법제도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그의 바탕이 되는 근본 원리와 가치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 Bar Association:ABA)DMLC 청소년시민교육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vic)는 ‘법교육이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평가력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경험’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신정음(2011, p. 896)은 법교육을 ‘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법 제도 및 질서를 이해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법적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학교 교육이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법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박성혁은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를 “전문법 학교교육이나 교정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법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의 법적 문제나 쟁점을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준법 의식을 갖춘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기하고 있다(박성혁, 2005, p.64). 한편 전제철(2006, p.85)은 “법질서 체계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법적 사고력을 가진 생활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다현(2006, p.36)은 법교육의 목표를 어떠한 법적 사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소양과 법적 문

2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해결능력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 법적 기능, 법적 가치·태도의 조화로운 발달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교육의 목표는 헌법교육의 목표에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헌법이 갖는 특성 때문에 법교육의 목표와 다른 점도 없지 않다. 법교육의 주요 대상이 되는 민법과 형법이 계약과 재산권, 범죄와 형벌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것인 반면, 헌법은 공동체 삶의 전반을 다루고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교육의 목적 역시 단순히 권리의식이나 인권의식, 정치제도에 대한 교육에 머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적 지식, 법적 기능, 법적 가치와 태도라고 하는 경우에도 헌법적 지식과 헌법적 기능, 헌법적 가치와 태도는 다른 일반 법률과 논의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법교육 일반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되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헌법교육은 공동체 삶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와 태도를 키워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므로 교육의 성격이 일반 법교육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겠다.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최고성을 가지면서도 생활규범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공동체의 삶에 관해서 합의하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헌법의 실천을 통해 헌법을 지켜나간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가 붕괴될 경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입헌국가의 실현, 헌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의 유지가 헌법교육의 목적이 된다. 아울러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서로 보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적인 인간은 자주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구성원 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결국 헌법교육의 목적은 법적 사고력의 증진이라기보다는 헌법적 인간=자주적 인간의 육성, 그리고 이것은 곧 민주적 시민의 육성이라는 목적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2) 교육 내용에 있어서 법교육과 헌법교육

현행 법교육 체계에서 헌법교육은 과거 정치교육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고, 7차 교육 과정 이후에는 법교육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되 사법교육이 강조되면서 헌법교육은 법의 분류체계에 따라 민법교육, 형법교육과 병렬적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오히려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지던 것만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전제철, 2006, p.86). 이것은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정치교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정치교육에서 헌법교육이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방향보다는 헌법이 무시되는 정치적 현실에 함몰되어 헌법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한 법교육에서도 헌법교육보다는 민법교육이 개인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게재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헌법교육은 전술한 것처럼 공법교육과 사법교육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질 것은 아니고 헌법적 인간이 곧 민주시민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교육은 민법과 형법과 구분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습득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아를 이루어가는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헌법교육에서는 인권과 통치구조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겠지만, 헌법의 본질상 공동체가 이상으로 삼은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러한 헌법적 가치가 지켜짐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성된다는 사실, 학습을 받는 자신도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행복 추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교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다른 법교육에서 교육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3) 정치교육과 헌법교육

정치교육이 정치사회화를 목표로 하여 참여적, 실천적 시민성을 강조한다면 헌법교육은 법사회화를 목표로 규범의식과 비판적 분석의 합리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전제철, 2007, p.256). 정치교육은 시민 개개인이

2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특정 정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우리 사회의 화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교육이라는 특성을 갖는다(전득주 외, 1999). 이에 대하여 헌법교육에서는 헌법이란 특정국가에서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헌법적 구현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헌법적 가치판단이 불가피하고,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본다(성낙인, 2006, p.27).

헌법이 정치현실적인 것이면서도 가치규범적인 특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의 목표와 법교육의 목표에 따라 헌법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정치교육과 법교육에 모두에서 헌법교육을 다루는데 있어 문제점도 동시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치교육에서는 헌법교육의 내용을 인권과 정치제도에 한정하고 있지만 헌법교육은 공동체 삶의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헌법적 가치는 인권과 정치제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을 정치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동태적이고 참여하는 것이 중심인 것으로 보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은 헌법적 가치질서에 따라 헌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고 헌법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시각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의 의사라 하더라도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을 국민의 의사를 이유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의 중요성이나 헌법제정권력과 입법권의 구별 등의 관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데올로기 면에서 보다 다양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수용하는 태도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칫 소수자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은 정치와 법치가 동시에 구현되게 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민의 의사라는 이유로도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헌법이 정권연장이나 권위주의적 정부 운영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헌법교육에 대해 터부시하는 입장이 없지 않지만,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헌법교육에서는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교육이나 헌법에 의한 권력 통제를 통한 인권 보장이 부각되어야 한다.

법교육에서의 헌법교육은 법학교육의 영향으로 헌법전 교육에 한정되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헌법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교육에서의 헌법교육은 헌법적 지식보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가 우선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교육이 특정 이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내에서도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특성을 단순화하여 교육시키는 것도 가치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그리고 헌법교육을 법교육의 관점에서 법적 지식과 기능을 길러주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관점도 있는데, 헌법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식과 기능 중심의 교육보다는 가치에 기반한 해결이 보다 바람직한 법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이라고 하겠다. 헌법교육이 다른 법교육과 구별되어 헌법적 가치에 구속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수적인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이 평화적이면서도 개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공존하며 추구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가치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 교육을 비판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입헌국가는 정치와 법치가 공존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3.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Civic education)에서 ‘시민’은 지위에 걸맞은 자질, 능력, 태도, 정신 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역사적 과정을 보면, 시민이라는 개념은 시민정신과 권리의식, 참여 자세와 책임성 등을 지닌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시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을 지닌 자를 의미하지만, 이와 같은 형식적 의미에는 시민참여, 시민정신, 시민으로서의 책무와 같은 내용성인 시민성이 수반된다(김영인·설규주, 2012, p.4).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인 시민성(citizenship)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시민성은 정치공동체나 시민사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정치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김영인·설규주, 2012, p.9).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의

24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전제한다. 시민적 삶이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책무를 다하며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모든 공적 공동체에서 요구된다(김영인·설규주, 2012, pp.14-15).

강대현(2006)은 우리나라 시민교육에서의 시민에 대한 관점으로 ‘홀륭한 국민’과, ‘합리적인 개인’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시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교육에 국가 논리나 시장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현대 시민사회에 적합한 시민 양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시민교육은 국가의 논리나 경제 논리가 주가 아니라 공적 담론과 실천의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논리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시민은 다음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 첫째,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인 자율이다. 둘째, 연대이다.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율은 나 혼자만의 자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율’이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시민은 이러한 자율과 연대 능력을 갖추어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강대현, 2006, pp.161-162).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성은 정치적 참여 측면의 능동적인 참여 태도와, 민주적 의식 측면의 합리성을 동시에 요구한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크게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별된다. 헌법이 지향하는 내용적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기본권은 그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의 표현으로서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식의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통치구조론은 정치적 참여의 형식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제철, 2006, p.111). 전제철(2006)은 헌법의 기본권을 ‘민주적 의식’에, 통치구조는 ‘정치적 참여’에 연관된다고 보고, 다수결 독재나 과도한 정치참여 혹은 백치적 정치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시민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기본권(민주적 의식)과 통치구조(정치적 참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명한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헌법교육은 ‘능동적인 참여 태도’와 ‘합리성’을 균형적으로 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전제철, 2006, p.111).

강경선(2012, pp.333-337)도 민주시민교육을 헌법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보았으며, 시민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시민을 주권자적 인격성을 갖춘 헌법적 인간상인 ‘주권자적 인간’으로 지칭했다. 주권자적 인간은 첫째, 각 사람의 개성과 특징에 따른 배려를 하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정의이고 여기에서 사회적 연대가 생긴다. 둘째, 주권자적 인간은 주권자적 인권을 갖춘 자율적 인간을 지향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인 책임과 의무 수행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시민의 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셋째, 주권자적 인식에 입각한 즉, 헌법에 대한 인식에 입각한 행동을 한다. 모든 국민들의 주권자적 인간화는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이자, 민주시민교육에 의해 함양되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이국운(2001)은 민주시민교육을 헌법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공화주의적 덕성을 갖춘 시민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정치공동체 속에서의 자기실현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정치공동체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일시한다(이국운, 2001, p.138). 공화주의적 덕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공동체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이다. 물론 사회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자질과 능력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이 각자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동등하게 지배하고 또 지배받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통한 구성원들의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사실적 불평등과 규범적 평등 사이의 모순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평등의 요청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숙고의 필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롭고 건강한 시민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이국운, 2001, p.139). 기본적인 권리들을 토대로 성장하는 덕성을 갖춘 시민들로 인해 정치공동체 그 자체 또한 덕성을 갖출 수 있기에, 시민들의 덕성은 정치공동체와 개인을 공영의 길로 이끄는 핵심 고리이다(이국운, 2001, p.140). 정치공동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시민들의 양성을 통해 정치공동체의 덕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이국운, 2001, pp.147-148). 헌법적 시민의 양성을 위한 헌법교육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보편적인 규범이 아닌 덕성으로서

26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의 ‘상호간의 경의’ 또는 ‘관용’이다(이국운, 2001, p.149). 따라서 헌법교육의 내용은 단순한 헌법지식의 전수에서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양성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야 하며, 헌법교육의 자세 또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비판적 토론 과정을 통해 헌법적 시민들이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이국운, 2001, p.150).

4. 소결

결국 시민교육에서 헌법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우리 사회를 유지·존속하고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헌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한 가장 기본적인 한 사회의 약속이며 최고 규범이다. 헌법에 대해 알고 헌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며, 그 가치를 실천하는 일은 그 사회의 유지 및 존속과 개인의 행복 추구, 자아의 완성을 위해 그 사회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따라서 헌법교육을 통해 교육되어야 할 시민교육의 덕목은 시민들이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인간상을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으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시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8. 5. 28. 96헌가 5). 이는 인간공동생활을 책임 있게 함께 형성해 나갈 사명을 간직한 인격체(사회성)로서의 인간과 모든 생활영역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유로운 개성신장을 추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격체(주체성)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는 견해(허영, 2009, p.136)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성은 사실 헌법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적 덕성이 여러 개념과 단어들로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겠지만, 결국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규범이면서 생활규범이 되는 헌법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Ⅲ. 헌법교육의 방향성

1. 서설

선행연구에서 헌법교육의 방향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하고, 헌법교육에서 지식적인 측면보다 가치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 속의 헌법교육이 되어야 한다거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다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도 공통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본다면, 헌법교육의 내용 또는 방향성은 헌법적 가치의 공유를 위한 헌법 가치 교육, 헌법적 가치의 실천을 위한 헌법 실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교육이 최고규범이면서 생활규범이 되는 헌법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성은 사실 헌법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상이기 때문이다. 헌법교육을 통해 개인은 헌법적 인간, 즉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 다른 아닌 민주시민을 이루어가게 되고, 국가는 입헌국가, 헌법을 추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헌법교육의 방향을 헌법 가치 교육과 헌법 실천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2. 헌법적 가치의 공유 (헌법 가치 교육)

헌법적 가치는 헌법에 내포되어 있는 시민적 덕성이라고 전술하였다.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는 어떠한 내용에서 교육되고 이해될 수 있는가?

첫째, 헌법의 역사적 형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헌법은 역사를 통해서 체험과 투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면서 기본권이 헌법적 최고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국가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헌법적 가치를 규범화하였으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

2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치구조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두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헌법 일반적인 가치 이외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헌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역사를 갖고 그 구성원은 어떤 삶을 유지해 왔는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기가 된 3·1혁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와 어떤 국가를 이상으로 삼았는가? 1948년헌법(건국헌법)의 제정은 어떤 이상을 담고 있었는가? 1948년헌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남북 분단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1948년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건국의 과제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주요한 사상과 실천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헌정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였는가? 민주헌정의 운영에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민주화의 계기가 된 국민적 운동은 무엇이 있었는가? 현행헌법인 1987년헌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의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등이 될 것이다. 헌법의 역사는 과거 헌법이 탄생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 세대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교육에서 헌법의 역사적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헌법의 이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은 국민주권, 입헌주의 기본권의 보장, 국가구조원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들 수 있다. Dynneson & Gross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자국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 사회과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핵심적 가치로서 12가지(정의, 평등, 박애, 경쟁, 타협, 협동, 정직, 충성, 자유, 존경, 관용, 개인주의)를 제시하였다.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헌법의 기본가치의 전달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

셋째, 인권의 보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권의 보장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행복을 자주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적 덕성을 발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이 권리의 자연권을 강조하고 보호 범위에서 확장적 성격을 가지면 국제법적인 수준에서의 강화된 보호를 내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인권과 기본권 간의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 기본권의 보호 노력을 강조하면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기본권 교육시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던 경향이 있고 인권 감수성의 강조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 교육에 있어서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로 교육하는 경우에도 인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권력의 분립과 통치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체계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능과 가치보다는 그 의미와 그에 따른 통치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이는 헌법의 가치적 측면에서 헌법을 교육하지 않고 인권과 통치기관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학습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권한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권한과 기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의 보장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참여 이외에도 대의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으로 교육해야 한다.

3. 헌법적 가치의 실천 (헌법 실천 교육)

헌법적 가치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생활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헌법은 공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아우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공동체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공동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 구성원이 헌법적 가치를 전 생활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적 가치의 실천은 교과교육에서 지식의 습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학급 운영, 교과 내외의 활동 전반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한다. 헌법 실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에는 법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단순히 지식을 전제로 사례에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적 요소를 활용한 헌법교육, 입법과정을 통한 헌법교육,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교육, 헌법가치의 실천이 구현되는 소재를 활용한

3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헌법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헌법 실천 교육을 위한 헌법교육에의 접근 방식 또는 교수-학습 방법, 수업모형이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가치의 실천을 위해서는 헌법교육이 인권과 통치구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율하는 공동체 삶의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하였던 것처럼 헌법교육이 법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최고규범으로서 갖는 지위에 따라 법교육의 일부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이념으로서 헌법적 가치 이외에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실천적으로 규율하는 가치가 있음도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생활과 법의 중요한 이념적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직업 생활, 교육과 관련된 권리,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부부 및 가족관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죄와 형벌에서 대표적인 죄형법정주의, 신체의 자유 등, 사회생활과 법에서 이해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환경, 경제질서에서의 자유와 창의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삶의 전반에 대한 실천 내용들은 기본권의 내용 면에서도 교육될 수 있지만, 실제 사회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추구하고 자기 완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헌법 실천 교육에 헌법전 자체에 대한 교육이나 헌법전 읽기 교육이 어떠한 의미나 유용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정확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 있는 듯하고(김대환·박훈, 2009, p.68), 교육 전문가들은 헌법전 교육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헌법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전에는 공동체와 구성원이 공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가치가 필요한지, 어떠한 시민적 덕성이

요구되는지 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전에 대한 이해와 성찰 없이는 헌법 실천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헌법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헌법’이라는 약속을 존중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길러져야 한다. 다만 문제는 헌법전의 이해가 일반인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 헌법의 체계적 해석을 추구하는 학문적 습관이 법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에 투영되어 헌법전에 대한 교육이 마치 헌법의 전문적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문제이다. 헌법전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라는 약속의 산물을 만들어 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공동체의 설계도 또는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싶어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헌법전 자체가 이해하기 다소 어렵더라도 헌법전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헌법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보조 자료가 사용되거나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몫은 헌법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헌법적 가치의 실천과 관련하여 준법교육의 문제가 있다. 준법교육은 사전적으로는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법규와 사회 보편가치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직간접적인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송성민, 2012, p.85). 법교육 또는 좁게는 헌법교육을 논의하면서 준법교육을 함께 논의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헌법교육이 헌법적 가치의 실천 교육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준법교육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준법교육이 헌법교육의 일부가 되거나 교육 과정에서 필요할 수는 있으나, 헌법교육의 목적이 준법교육으로 치환될 수는 없고, 준법교육이 헌법교육으로 충분하거나 헌법교육을 정당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헌법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민주적 시민들이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헌법에 단순히 복종하거나 고착화된 헌법을 단지 유지해 나가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헌법의 가치를 교육한다는 것도 헌법적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발적, 자율적 동의가 되어야 한다.

3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헌법교육의 방향성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헌법의 최고성에 대한 믿음, 헌법의 실천을 통한 생활화, 인권의 강조와 국가 권력의 제한에 대한 믿음, 헌법적 인간의 육성, 헌법적 가치 교육을 통한 시민적 덕성의 함양, 헌법적 가치의 공유와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 등이다. 준법의식은 법의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주어진 상황에서 법의 적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때 자발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준법교육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는 준법‘의무’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헌법을 포함하여 법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과 같이 법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IV. 결론

헌법교육은 법의 분류 가운데 실정법 - 국내법 - 공법 - 헌법의 분류 체계 하에서 인식되어 왔다. 중등학교의 헌법교육은 법과정치 과목의 6단원 중 한 단원의 비중으로만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교육이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후 정치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지만 선거와 정당 등 정치 참여와는 유리된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헌법교육이 권리 중심의 교육이 아닌 의무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헌법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평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헌법교육을 생활법교육으로서 사법교육, 범죄와 형벌 또는 근로관계 등에 대한 법률과 병렬적으로 구분되는 범주로 생각한다면 이는 헌법교육을 헌법전에 갇힌 개념으로 인식하고 헌법교육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교육은 헌법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 공법과 사법, 사회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헌법은 우리 국민이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약속이고,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신념과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헌법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청사진이자 우리 국민과 국민, 국민과 국가 간의 약속으로 서로 아껴 주고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약속한 문서이다. 헌법을 지키면 헌법이 실현되는 국가가 되고 그 구성원인 국민은 각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의 문서이다. 따라서 헌법교육을 통해 개인은 헌법적 인간, 즉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 다름 아닌 민주시민을 이루어가게 되고, 국가는 입헌국가, 헌법을 추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 인권과 통치구조의 교육이 되지만 이는 단순히 기본권의 종류와 통치기관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지식적인 부분만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 보호와 권력 분립이 추구하는 가치, 즉 헌법적 정의와 그 정의의 실천이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헌법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헌법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시민적 덕성은 그것이 공화적 시민이든 자유와 평등이든 관용과 배려, 충성, 질서이든 헌법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준법의식이 법교육이나 헌법교육의 직접적인 목적이 된다면 자칫 의무교육으로 인식되는 우를 범하기 쉽다 그 보다는 헌법교육을 통한 법의식의 발전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약속에 대한 존중과 충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준법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헌법교육은 궁극적으로 헌법이라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 헌법은 나 자신부터 실천하겠다는 노력으로 결실 맺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헌법의 최고성에 대한 믿음과 헌법의 실천을 통한 생활화로 요약하였는데, 이는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입헌국가의 실현,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적 인간=자주적 인간=민주적 시민의 완성과 다름 아닌 말이다.

[참고 문헌]

- 강경선(2012).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민주법학」 제50호. pp.305-341.
- 곽한영(2009).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pp.1-28.
- 김다현(2006).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영향 연구: 고등학교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 2호. pp.35-68.
- 김대환·박훈(2009).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법교육연구」 제4권 1호. pp.57-88.
- 김선택(200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 교육”. 「영산법률논총」 제2권 1호. pp.1-38.
- 성낙인(2008).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pp.134-148.
- 송성민(2012). “준법교육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81-108.
- 신정음(2011). “법교육과 법의식 발달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제15권 4호. pp.893-910.
- 이국운(2001).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법과사회」 제20호. pp.129-152.
- 이대성(2011). “미국 헌법교육 동향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3호. pp.283-316.
- 이종근(2009). “미국 로스쿨제도 하에서의 법학교육 및 우리 법학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pp.161-181.
- 전광석(2006). “헌법과 국민통합”. 「법제연구」 제30호. pp.129-152.
- 전제철(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제37권 2호. pp.81-106.
- 전제철(2006).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 2호. pp.85-121.

허종렬(2009).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제2권 제1호. pp.73-91.

강대현(2006).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한국학술정보.

김영인·설규주(2012). 시민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성낙인(2013). 헌법학. 법문사.

정종섭(2013). 헌법학원론. 박영사.

허영(2009). 한국헌법론. 박영사.

Dynneson & Gross(1998/2007). Designing effective instruction for secondary social studies. Merrill.

•• 주제 발표 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과정 실태와
개선 방안**

[주제 발표 2]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과정 실태와 개선 방안

허 종 렬(서울교대 교수) · 정 필 운(한국교원대 교수)

- I. 문제의 제기
- II.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현황
-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 IV. 결론

I. 문제의 제기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9번 과제 '법과질을 존중하는 문화구현'의 핵심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교육 등 법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일부 여론은 국민을 가르치고 훈육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였다.¹⁾

* 이 글은 2013년 6월 1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제를 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은 형식적으로 완성된 학술논문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일체의 인용과 전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학술대회의 토론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내용을 강화하여 조만간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춘 완전한 글을 학술지에 게재하여 이에 보답하겠습니다.

1) 2013년 2월 22일 노컷뉴스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2771>

4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리 학회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이를 춘계학술대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학회의 기획의도에 따라 헌법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법교육과정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것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현황을 개관한다(Ⅱ). 그리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Ⅳ).

Ⅱ.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현황

1. 추구하는 인간상²⁾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

2)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이하 '고시1'이라 줄인다), 3쪽.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하여 첨가하였으며, 이하 같다)

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학교급별 교육목표

(1) 초등학교 교육목표³⁾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바른 인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 ①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②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③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 ④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2)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 ①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 ②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3) 고시1, 쪽

4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 ③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④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3) 고등학교 교육목표⁴⁾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①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②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③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④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사회 과목 목표

(1) 초·중학교 사회 과목 목표⁵⁾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

4) 고시1, 55쪽.

5) 고시1, 4-5쪽.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또,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판단 및 의사 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그리고 학교 특성에 따라서 지역성과 시사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사회과는 학습자의 성장 발달 정도와 사회·문화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로 주안점을 달리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녀야 한다. 또, 이러한 지식과 사고를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의하여 발견, 적용하고,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44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사회 교과와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나.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다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지리적 문제를 해결한다.

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라.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

마.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바.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 국가 발전과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2) 고등학교 사회 과목 목표⁶⁾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사회'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중학교 사회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는 학생 자신에서 시작하여 삶의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지구촌과 미래라

6) 고시1, 55쪽.

는 공간과 시간까지 포괄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시한다. 또한 다양한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복합적임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게 하고 있다.

‘사회’는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자연지리, 인문지리, 문화지리 등의 기본 개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아울러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사회를 보는 바른 시각을 기르기 위하여 관찰, 조사, 분석·토의토론, 논술문 작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를 위한 ‘사회’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른다.

나.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공간,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경험적인 자료와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기른다.

(3) 고등학교 법과 정치 목표⁷⁾

‘법과 정치’ 과목은 정치현상과 법체계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파악하며 정치·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사회 교과목의 선택 과목이다.

‘법과 정치’ 과목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국민의 권리·의무와 정치 과정,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 원리, 국제 사회의 특징과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편, 기본적인 법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법 관련 문제들을 이

7) 고시1, 143-144쪽.

46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해하고, 나아가 법절차에 따라 합리적·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법과 정치’ 과목을 통해 정치 현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정치 과정과 제도를 이해하며,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를 이행하는 삶을 위한 법의 역할을 이해하고 준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정치’ 과목을 학습을 통해 정치적·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지역·국가·국제 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 시민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 또한 법의 이념과 원리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가 이행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지니게 한다.

가. 민주 정치를 발전,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형태와 통치 원리, 국제 정치 등 정치 현상에 관한 기본 개념과 원리 및 특징을 파악한다.

나. 정치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집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하여 반성적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함양한다.

다.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 과정과 참여 방법 등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치 현상과 관련된 지식을 이해한다.

라. 현대 민주 국가에서의 법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법적 문제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적·사회적 분쟁을 합리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내면화하여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사. 지역 사회와 국가, 국제사회의 특성과 정치적 운영 원리를 이해하며 민주적 법체제와 절차를 존중하고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민주 사회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4. 내용 체계

(1) 초·중학교 사회 과목 내용 체계⁸⁾

학 년	지리영역	일반 사회 영역	역사영역
초등 학교 3~4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살아가는 곳 ◦ 달라지는 생활모습 ◦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의 모습들 ◦ <u>민주주의와 주민자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과 소통하기 ◦ 우리 지역, 다른 지역 ◦ 경제 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 지역 사회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모이는 곳 ◦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 다양한 삶 ◦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초등 학교 5~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경제의 성장 ◦ <u>우리나라의 민주 정치</u> ◦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8) 고시1, 6쪽.

4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중 학 교 1~3 학년	지리영역	일반사회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사는 세계 ◦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 자원의 개발과 이용 ◦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 우리나라의 영토 ◦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사회생활 ◦ 문화의 이해와 창조 ◦ 사회의 변동과 발전 ◦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 경제 생활의 이해 ◦ 시장 경제의 이해 ◦ 일상생활과 법 ◦ 인권 보장과 법 ◦ 헌법과 국가기관 ◦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 국제 경제와 세계화 ◦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2) 고등학교 사회 과목 내용 체계⁹⁾

영역	내용 요소
사회를 바라보는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이해 ◦ 세상 이해
공정성과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공동체 ◦ 다양성과 관용 ◦ 삶의 질과 복지
합리적 선택과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와 생애 설계 ◦ 일과 여가 ◦ 금융 환경과 합리적 소비
환경 변화와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 공간 변화와 대응 ◦ 세계화와 상호 의존
미래를 바라보는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9) 고시1, 55-56쪽.

(3)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 내용 체계¹⁰⁾

영역	내용요소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기능, 민주 정치의 발전과정 ·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 ·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과 과제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 정당과 정당 정치, 선거 제도의 유형과 특성 ·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
헌법의 기본 원리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한계 ·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개인 생활과 법	· 민법의 기본 원리, 계약과 불법 행위 · 가족 관계와 법 · 재산 관계와 법
사회 생활과 법	· 형법의 의의, 범죄와 형벌의 종류 · 형사 절차의 이해 · 사회법의 이해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 국제 사회의 특성과,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 · 국제법의 특성과 형태 · 국제 관계와 국가 주권의 문제,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

5. 학습내용과 성취 기준

(1) 초등학교 사회과목 학습내용과 성취 기준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4학년에서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라는 단원에서이다. “이 단원은 민주주의와 민

10) 고시1, 144쪽.

5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적 삶에 대한 이해와 참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민주주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주민 자치임을 이해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①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주민 자치임을 이해한다. ②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대표자와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④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보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¹¹⁾

2012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2007년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하여 이 단원의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①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조정해 가는 민주적 정치 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규칙과 절차 준수,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 결정 등 민주적 정치 생활의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과정에서 학급이나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갈등 사례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도록 권장한다.

② 선거를 통해 대표의 의미 및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생활 주변에서 경험하는 선거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표와 대

11) 고시1, 11-12쪽.

12) 이상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이하 교육과정 해설1), 332-333쪽.

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회 선거, 지방 선거, 전국적인 선거 등을 사례로 하여 투표의 의미, 공정한 선거 절차, 대표의 의미,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하도록 한다. 모의 투표나 선거와 같은 활동 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례 분석도 좋은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③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을 이해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의 개략을 파악한다.

이 내용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며, 주민 자치를 더 잘 실현하려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을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하는 일로 나누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이 학생 주변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도 파악하도록 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지역 신문이나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서 지방 자치 단체가 하는 일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주민 참여와 자원 봉사의 경험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 내용은 주민 참여와 자원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민주 정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자원 봉사와 주민 참여가 중요함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자원 봉사자를 초청하여 그 경험을 듣는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에서 가능한 실제적인 참여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학급 구성원과 함께 나누어 본다. 될 수 있으면 직접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좋은 자원 봉사 사례 혹은 주민 참여 사례를 조사하거나 관련 인사를 초빙하여 이야기를 듣는 간접 경험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5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⑤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한다.

이 내용은 지역 사회의 문제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선택한 후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제의 해결 과정, 지방 정부의 역할, 주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건이 허락하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택하여 학생의 수준에서 그 해결 과정을 모색하는 모의 체험을 하거나, 실제로 참여해 보는 문제 해결 활동의 경험을 갖도록 한다.

⑥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 내용은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극복된 바람직한 지역 사회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런 미래를 실현할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주민 참여와 합리적 의견 조정 과정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발전함을 이해하고 추세 예측법이나 시나리오법 등 미래를 예측해 보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응용하여 지역 사회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토론해 본다. 지역 사회의 미래를 상상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미래 모습을 글, 그림, 노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제목으로 학교 법교육과 헌법교육 내용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 단원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의 원리와 주요 국가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파악하고, 국가 구성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자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과 주요 법률이 국민 생활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이해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본 구조와 기능 및 삼권 분립의 원칙을 이해한다.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예,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을 이해하고, 법(예, 민법, 형법 등)이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②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국민의 기본적 의무(예, 국방·납세·근로·교육·환경보전·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각 기관이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¹³⁾

2007년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하여 이 단원의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임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개선하고 성취하여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참여의 중요성과 제도화된 참여 방법들을 알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참여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학습할 때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참여 정신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외의 다양한 법들이 우리 생활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한다.

이 내용은 국가 통치 체계의 근본 원리를 정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포함한

13) 고시1, 14-15쪽.

14) 교육과정 해설1, 358-360쪽.

54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주요 법률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헌법 전문과 헌법의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헌법 이외의 법률을 안내할 때 법체계 전체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③ 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을 권력 분립의 원리와 연관지어서 이해한다.

이 내용은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기능과 권한을 파악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권력을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중요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국가 기관의 기능을 모두 학습하기보다는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국가 기관의 역할이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여 추상적인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내용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 헌법을 비롯한 중요 인권 문서 등에 규정된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나 집단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인권 교육은 인지적 정보의 습득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적이고 참여적이며 활동 중심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⑤ 공공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자각하고 이를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내용은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시켜 토론이나 모의 활동을 해 봄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상호 의존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내용은 민주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보편적 인권 의식에 기반하여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경험을 갖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을 모의 학습 상황이나 구체적인 참여 경험에 바탕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다양한 차이와 갈등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들을 많이 접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제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최고의 법, 헌법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잘살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 튼튼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며, 헌법은 여러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헌법에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담겨 있다. 그리고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이 담겨 있기 때문에 헌법을 최고의 법 혹은 법 중의 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헌법의 뜻과 어긋나는 법은 만들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 존엄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규정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들을 정해 놓고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특히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헌법의 바탕이 되는 내용으로서 법을 만들고 실천하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헌법에는 기본 원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 각각의 원리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들어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고칠 때에는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 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국민의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국민 스스로 헌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권리와 의무

헌법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에 정해 놓은 것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 공무원이 되어 나라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아서 생활할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를 정해 놓고 있다.

국민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¹⁵⁾

(2)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내용과 성취 기준

중학교 사회과에서 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정치생활과 민주주의”라는 제 4단원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4)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¹⁶⁾

정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한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 정치 제도를 정부 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15) 이상 초등학교 사회 6-2, 32-35쪽.

16) 고시1, 26쪽

5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① 정치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민주 정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정치의 특징을 인식한다.

② 민주주의의 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③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 정치 제도를 정부 형태 중심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제5단원에서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라는 내용이 가르쳐진다.

(5)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¹⁷⁾

민주 사회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파악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을 탐색한다.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수행하는 정치 활동을 파악한다.

①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인식한다.

② 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을 탐구한다.

본격적인 법교육은 제8~10단원 “일상생활과 법”, “인권보장과 헌법”, “헌법과 국가기관”이라는 단원에서 행하여진다.

(8) 일상생활과 법

17) 고시1, 27쪽.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는 공동의 약속임을 이해한다. 법의 의미와 목적을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법 규범의 유형과 특징을 탐구한다. 나아가 법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를 재판의 중심으로 파악한다.

① 다른 사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법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② 규율하는 생활 영역 중심으로 법 규범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다.

③ 재판의 의미와 종류(예,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를 이해하고, 심급제도가 가지는 법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④ 일상생활에서의 분쟁 사례(예, 차별, 폭력, 저작권 침해 등)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 인권 보장과 헌법

인권 보장의 역사를 이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 이유를 파악한다. 나아가 사례 분석을 통해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관의 역할을 파악한다.

①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헌법의 의의를 인식한다.

②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탐구한다.

③ 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기관(예: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을 이해한다.

(10) 헌법과 국가 기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기관인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6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한다. 또한 각 국가 기관의 주요 조직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 국가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한다.

①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국회의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②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③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을 탐구한다.

여기서 2007년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하여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단원의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① 인권 의식의 성장과 헌법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인권 개념의 등장과 성장 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탐구를 통해 인권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헌법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헌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 내용의 학습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 보는 학습 활동을 권장한다.

②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을 보호하는 수단을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나 수단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18) 이상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이하 교육과정 해설2), 332-333쪽.

원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침해되는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수단을 파악하도록 한다. 헌법 침해와 헌법 수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려는 정부의 성격과 형태를 이해한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며 각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권력 분립 제도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정부 형태와 특징을 조사하게 하여 비교하는 수업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④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가진다.

이 내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존중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국가나 다른 개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받을 경우 자신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법의식과 타인의 기본권 역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를 탐구하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역할극을 통하여 기본권 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공감적 이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3) 고등학교 사회과목 학습내용과 성취 기준¹⁹⁾

19) 고시1, 56-67쪽.

6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고등학교 사회는 통합교과과정으로 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단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체 학습내용과 성취 기준에서 법교육,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가) 개인 이해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해하여, 시민사회에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 공동체 및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①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현 상황(가치, 비전, 장단점 등)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

②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 및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③ 개인을 둘러싼 자연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 화경과의 공존 필요성을 파악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① 나를 나이게끔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②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성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

③ 사회적 관계 맺음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④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① 어떤 학생이 자신의 둘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진 속 나'와 '지금의 나'는 크기, 생김새, 판단력, 심지어 몸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요소들도 많이 바뀌었다. 이 때 사진 속의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무엇인지에 관해 발표한다.

② 자신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각각의 관계 맺음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찾아보고 자신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관계 맺음을 발표한다.

③ 자신의 성장 과정,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의 존재 가치'를 성찰해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

④ 다수의 힘에 눌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 경험을 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발표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함께 토의한다.

⑤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바람직한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해 본다.

(나) 세상 이해

개인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기(원인)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① 사실과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② 다양한 자료(예: 통계, 지도, 신문 기사 등)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한다.

③ 사회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원인)와 결과를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평가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64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 ① 가치의 불일치는 왜 해결하기 어려운가?
- ②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통계자료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통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활동을 평가하는 경우 동기(원인)와 결과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 ① 어떤 지역을 개발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경우 환경 보존을 강조하는 측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대립하는 두 입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과 가치의 차이를 조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다.
- ② 인구, 출산율, 가족의 형태, 가구원 수 등의 변화 추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가족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경제 성장, 사회적 관계, 도시 및 농촌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다.
- ③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경제, 교육 등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조사하고, 저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 ④ 통계자료를 제작 또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예: 통계 계산법의 문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착각,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 ⑤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읽고, 정보의 왜곡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본다.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

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 ②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③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주권자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거래 제도, 국토균형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 ① 성격, 능력, 역할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의 경계는 어디인가?
- ③ 다수결의 원칙은 최선의 방법인가?
- ④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주권자로서 선거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청원, 시민운동, 봉사활동 등)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⑥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⑦ 기회의 평등(기회균등)과 결과의 평등,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 ① 인간의 권리가 신장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 ② 소수집단의 의미와 실태를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

66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을 찾아본다.

③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상속세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 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다.

④ 집단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수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이유를 발표한다.

⑤ 시민불복종에 관한 역사적인 사례(예: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를 찾아보고, 준법정신과 시민불복종이 서로 충돌할 때 이 원리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다.

⑥ 구체적인 사례(경제, 환경 문제 등)를 활용하여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인 '공유지의 미극'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찾고,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야 하는지에 관해 발표한다.

⑦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치적 제도와 정부 구성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 분석한다.

⑧ 여성차별 혹은 지역 간,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는 구체적 사례를 찾아보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밝힌 후 여성 할당제나 지역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발표한다.

⑨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교육, 복지,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주장이 적용된 구체적 사례를 찾아본다.

(나) 다양성과 관용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란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

-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 ③ 다문화 사회(지역, 인종과 민족, 성, 계층, 장애 등 고려)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 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차이는 차별을 함축하는가?
- ③ 다양한 사회적 갈등(지역, 인종, 계층, 문화적 차이 등)은 지리적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④ 다문화 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 ⑤ 우리의 단일민족 의식은 다문화 사회의 걸림돌인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 ① 세계의 종교 및 민족 분포 상황을 알아보고, 종교 및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지리적, 역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해 본다.
- ② 종교의 의미,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의 영역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조사한다.
- ③ 다양한 통계자료(다문화 가정의 수, 분포지역, 가족구성원의 출신 지역 등)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는 추세와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④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찾고 각 정책별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 ⑤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의 긍정적 요소 및 부정적 요소를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 상대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6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지에 관해 발표한다.

⑥ 계층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지는 현상을 지도로 표현한 후, 왜 계층이 다르면 사는 곳도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 삶의 질과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한다.

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②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부와 사회봉사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①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중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②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④ 경제 발전과 삶의 질은 어떤 상관관계인가?

⑤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⑥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과 노숙자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① 낙후된 지역(예: 도시의 쪽방촌), 무허가불량주택지역(예: 비닐하우스촌), 노숙자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조사하여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 ② 다양한 통계자료(GDP, 행복지수, 환경 지표 등)를 조사하여 경제발전 정도 및 환경보전 여부 등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다.
- ③ 다양한 분야(예: 경제, 교육 등)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을 조사하고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활용하여 각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후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한다.
- ④ 여러 사상가들(예: 공자, 노자, 토마스 모어, 아담스미스, 칼 마르크스 등)이 제시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찾아 정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 및 방법과 비교한다.
- ⑤ 인플레이션이 국민경제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 ⑥ 좋은 거주지의 조건 (자연환경, 교통, 경제적, 문화적 여건 등)과 공간 구조를 알아보고, 자신의 거주지를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조건과 그 이유를 발표한다.
- ⑦ 지역개발 방식으로서의 상향식 개발과 하향식 개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상향식 개발 방식이 중시되는 이유를 찾아본다.
- ⑧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다른 사회와 비교하고, 기부 문화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토대로 자신의 기부 계획을 설계해 본다.
- ⑨ 자신이 경험한 봉사 활동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바람직한 봉사 활동의 의미와 방법을 찾아본다.

(3) 합리적 선택과 삶

(가) 고령화와 생애 설계

고령화가 한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를 염두에 둔 생애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 ①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현상과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② 생애발달 단계별 과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애설계(교육과 취업, 결혼, 출산, 노후 등)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예측한다.
- ③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저축과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파악하고 자신의 일생주기를 고려한 재무 설계를 한다.

[이슈 도는 문제 예시]

- ① 기대여명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②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는 개인 또는 가족의 몫인가 아니면 국가, 사회의 몫인가?
- ③ 일과 여가를 어느 정도를 분배하여야 하는가?
- ④ 정년퇴직연환을 늘리는 것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선택일까?
- ⑤ 농촌의 노인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 ①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연령층이 감소하고, 생산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각 대안들을 평가해 본다.
- ② 우리나라 가정의 소비 유형(예: 식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 유형이 만들어진 이유와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해 본다.
- ③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다.
- ④ 생애 주기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계산해본다.(단, 출산 육아비, 교육비, 생활비, 주택마련비등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것)
- ⑤ 우리나라 지도에 고령화 지수의 분포를 표기하고, 고령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인구정책을 모둠별로 발표해 본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과정 실태와 개선 방안 · 71

⑥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향후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추론해 보고, 생애주기 단계별 소득 및 지출 비용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해 본다.

(나) 일과 여가

현대 사회에서 일과 여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근로 조건의 개선 및 여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사회의 직업세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설계한다.
- ② 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창업 활동(절차, 입지 선정 등)을 설계한다.
- ③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찾아본다.
- ④ 현대 사회에서 여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설계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 ① 진로 선택에서 소덕이 최우선적인 기준인가?
- ② 직업과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 ③ 개인이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개인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나은가?
- ④ 일을 하기 위해 여가가 필요한가? 여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 ⑤ 여가 시간의 확대는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 ①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를 알아보고, 개인적 도는 사회

7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적 측면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 ② 미래에 유망한 직업과 사라질 직업을 조사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의 특성을 찾아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의한다.
- ③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입지 조건을 지리적 조건, 인구분포,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입지를 찾아 창업 설계를 해 본다.
- ④ 구인광고를 조사해 보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모의면접을 실행한다.
- ⑤ 학교 밖 단체 혹은 학부모 지식기부를 통하여 창업아이템을 정하고 마케팅, 생산, 재무, 인사 등을 학습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 ⑥ 청년실업률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찾아 제시하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와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⑦ 실업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대별 실업의 현황과 그 원인을 추정해 보고 실업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⑧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대학진학의 이유로 취업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대학의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토론한다.
- ⑨ 여가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 후 지역별 여가 시설 등을 활용한 여가 계획을 세워본다.
- ⑩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당 최저 임금을 알아보고, 이를 법률에 규정한 이유를 파악한다.

(다) 금융환경과 합리적 소비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경제생활과 관련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와 저축, 신용과 부채 문제 등을 장·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 ①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 개인의 경제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②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소득을 소비와 저축에 적절히 배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③ 경제생활에서 다양한 지불방법(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과 저축수단(예금, 채권, 주식 등)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과도한 소비의 문제점과 신용이나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 ① 금융자본의 국제 이동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합리적 소비란 무엇인가?
- ③ 신용과 부채 관리는 왜 필요한가?
- ④ 국제적 투기 자본(핫머니)의 유입과 유출은 한 국가에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 ① 최근의 금융위기(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혹은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가, 사회와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 ② 각 가정의 통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IT 관련 소비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발표해 본다.
- ③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과도한 신용 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본다.
- ④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조사한 후 모둠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발표한다.
- ⑤ 과소비와 관련된 통계자료 및 과소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예: 베블렌 효과, 벤드왜건 효과 등)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과소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⑥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공장 설립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런 해외 직접투자가 개인 및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한다.
- ⑦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입 규모에 대한

74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계를 조사해보고, 이와 같은 외국인들의 간접투자가 우리나라 주가, 환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4) 환경변화와 인간

(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이해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일상 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①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며, 비판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파악한다.
- ② 공간정보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일상생활 및 자연 환경 활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 ③ 정보화로 인해 나타나는 일상생활과 공간 활용 방식의 변화 및 문제점(예: 인터넷 중독, 감시 사회, 정보 노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 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 ② 과학자는 사실을 탐구하는 사람이므로 과학적 발견이 가져올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 ③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④ SNS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⑤ 공간정보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에 미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⑥ 정보화의 진적은 계층 격차를 완화시키는가?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 ①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다. 각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발표하고 토론해 본다.
- ② 각 시대마다 제작된 세계 지도를 비교하여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세계관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본다.
- ③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사회의 변화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는지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 ④ 현대사회의 속도 지향적 특성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느낌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본다.
- ⑤ GIS, 원격탐사, GPS 등의 공간 정보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파악해 본다.
- ⑥ 정보화가 지역 간 경제적,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한다.

(이하 생략)

(4) 고등학교 법과 정치 학습내용과 성취 기준²⁰⁾

(1) 민주 정치와 법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파악한다.

(가)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

20) 고시1, 145-147쪽.

76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속에서 이해한다.

(나)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우리나라와 외국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 선거 제도, 정당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 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한다.

(가) 정부의 기본적인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한다.

(나)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선거 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다)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3)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가) 헌법의 정치적·법적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나)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다)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마)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조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능을 탐구한다.

(4) 개인 생활과 법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가족 및 재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 관계들을 탐구한다.

(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나) 일상생활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

(다) 가족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라)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5) 사회 생활과 법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형법의 의의와 형사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법의 종류와 의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가)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파악하고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일상 생활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나)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를 탐구한다.

(다) 사회법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법이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6)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특성과 종류를 이해한다. 국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충돌하는 국가 주권의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 관계의 방향을 모색한다.

(가) 국제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탐색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나) 국제 사회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 단체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국제 연합과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다) 국제법의 존재 형태를 이해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이 갖는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라)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 관계의 방향을 모색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는다.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육목표의 설정

(1)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²¹⁾ 교육과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교육이란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법과 절차, 법체계를 가르치고, 학생과 일반시민이 이를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고, 법에 대

21) 데이비드 G. 암스토롱 저, 최병모 역, 교육과정 개발과 문서, 협신사, 2006, 31쪽.

한 능동적인 참여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²²⁾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 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 중 이 글의 고찰범위는 제목이 상정하는 것처럼, 학교법교육이다.

이러한 법교육은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즉 학생 또는 일반시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소양(Legal Literacy)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법전문가를 기르는 법학교육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교육활동이다.²³⁾

이러한 이유로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중요한 법적 개념, 원리를 가르치고, 문제해결력,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질서의식 등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²⁴⁾

한편, 위에서 제시한 법교육의 개념표지에 비추어 헌법교육이란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즉 학생 또는 일반시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헌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교육이 법교육의 영역에서 민법, 형법, 사회법 등의 법의 종류의 1/n 일수는 없다. 법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교육과정의 선택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harles J. White에 따르면, 헌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22) Starr의 법교육의 정의를 차용.

23) 허중렬,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2009, pp.7-14.

24) 박상준,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중심 토론수업”, 사회과교육, 제42권 제2호, 2003, 215쪽 참고.

8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특히 강조된다.²⁵⁾ 헌법을 배움으로써 법치주의원리의 하나의 내용인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치주의적 사고를 익힐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에서 보장된 권리라도 공익(public interest)이나 타인의 권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가장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나아가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의 형식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하는 법형식인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된 것을 배움으로써, 법은 국민의 동의나 지지 없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정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²⁷⁾

한편, 헌법은 기본권과 더불어 납세, 국방의 의무와 같이 전통적인 시민의 의무를 공부함으로써, 왜 권리와 더불어 의무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무감을 습득하게 한다.²⁸⁾

(2) 정치교육과 구별

헌법교육이 정치교육의 일부로 취급되거나, 이와 혼동되기도 한다. 헌법은 그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정치권력, 정치과정, 정치제도 이해를 통한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 정치교육도 법교육과 헌법교육과 마찬가지로 규범교육과 가치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규범 특히 헌법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접근은 실증적인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는 달리 규범적인 속성을 가진다.²⁹⁾ 따라서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 구별되며, 구별되어야 한다. 나중에 서술하는 것처럼, 헌법의 내용 중 국가기관의 구성·운영론 영역은 정치교육과 그 대상이 겹치는 영역이고, 교육과정에서

25) Charles J. White, Law Related Education in America, ABA/YEFC, 1975, p.30 참고.

26) 허종렬 외,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과 교재개발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2009, 6쪽.

27) Jerrold R. Coombs, Ends in View -An Analysis of the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Centre for the Study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Centre for Education, Law & Society Simon Fraser University: 78, 1990, p.78.

28) Jerrold R. Coombs, 앞의 글, p.79.

29) 허종렬,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9, 8-9쪽; 허종렬 외,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과 교재개발 방안 연구”, 2009, 3-4쪽.

살펴 본 것처럼 실제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서술을 정치교육의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정치교육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헌법교육의 대상이 넓다하여도 이에 대한 서술을 전적으로 정치교육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헌법교육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이를 중요한 교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정치교육에서는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정치원리를 넘어 생활원리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나라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치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나랏일에 한정되지 않고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일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일터에서도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사회 6-2, 18쪽)

이것은 아마도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운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때 뿐 아니라, 가정, 학교, 일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영역에서 다수결원리를 주장할 우려 등이 있다. 민주적인 생활양식은 민주주의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이와 같이 구별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단원을 통합성(integration)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정치교육자와 헌법교육자가 합의하는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교육과 분리된 정치교육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헌법교육이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바탕하여 규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요소로 하는 시민성 함양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며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

8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바탕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헌법교육을 통하여 시민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이해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무정부적 영역으로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참여지향적 시민사회에서 규범지향적 시민사회로 전환 또는 참여지향적인 시민사회의 성격에 규범지향적 시민사회로 보완을 주장하고, 이를 위하여 헌법교육을 통한 정치교육의 보완을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³¹⁾

(3)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법과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

법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일부로서 조직되어 있고, 사회과 교육은 학교 교육의 일부로서 조직되어 있다. 교육은 개인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지혜를 전승하고 헌법국가 실현을 위한 시민성을 함양한다.³²⁾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은 공동체에서 유리된 개인주의적 인간도, 공동체에 함몰된 전체주의적 인간도 아닌, 사회적 관련성과 사회적 책임성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인격체이다.³³⁾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30) 김다현,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교육의 본질”,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2008.

31) 전제철, “규범 지향적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9권 제2호, 2007, 256쪽.

3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3, 387-388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401-402쪽.

33) 전광석, 앞의 책, 257쪽; 정종섭, 앞의 책, 401-402쪽; 헌재결 1998.5.28, 96헌가5; 헌재결 2003.10.30, 2002헌마518.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과 일치하며, 이를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2.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1) 개관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면,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론에서 교육내용을 선정하는데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은 타당성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 중요성의 원리, 사회적 유용성의 원리, 인간다운 발달의 원리, 흥미의 원리, 학습가능성의 원리 등이다.³⁴⁾

그리고 교육내용의 조직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내용 구성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조직요소, 조직구조, 조직중심, 조직원칙, 조직원리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조직원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수평적으로 조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스코프, 통합성이라는 원리이고, 수직적으로 조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계열성과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원리이다.³⁵⁾ 스코프(scope)란 특정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가리킨다.³⁶⁾ 계열성(sequence)이란 교육내용을 배우는 순서를 말한다. 학생이 어떤 내용을 먼저 배우고 어떤 내용을 뒤에 배우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³⁷⁾ 수직적 연계성(vertical articulation)은 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의 연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특정한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리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성(integration)은 교육내용들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교육내용들을 하나의 교과나 단원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34) 김대현, 교육과정의 이해, 학지사, 165-168쪽.

35) 김대현, 앞의 책, 168-175쪽.

36) 김대현, 앞의 책, 175쪽.

37) 김대현, 앞의 책, 177쪽.

(2) 타당성의 원리: 현행 교육과정은 법교육의 목표인 시민성 함양에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목표 또는 요구를 진단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교육과정론에서는 타당성의 원리라 한다.³⁸⁾ 현행 교육과정이 법교육의 목표인 시민성 함양에 충실하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법교육의 목표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것, 학생 또는 일반시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소양(Legal Literacy)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교육이 학생들에게 법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중요한 법적 개념, 원리를 가르치고, 문제해결력, 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 질서의식 등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현행 사회과 교육의 교육과정이 이에 충실하게 설계되었는가?

① 이른바 생활법 교육론과 그 문제점

법교육에서 이른바 생활법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생활 경험의 기초가 개인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 등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볼 때 인간의 생활유형인 법도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³⁹⁾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따라 실제 제7차 교육에 따른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에서는 헌법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과감하게 사법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고, 형법, 행정법, 사회법 등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⁴⁰⁾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인 법과 정치에서도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38) 이상 김대현, 앞의 책, 166쪽.

39) 예를 들어, 윤종식, “중학교 사회과 사법교육 강화에 관한 연구: 민주시민 자질 육성을 중심으로”, 1993,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쪽.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제37권 제2호, 2005, 93쪽에서 재인용.

40) 전제철, 2005, 81쪽.

그러나, 시민성 함양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염두에 두고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면 이러한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우선 헌법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피상적인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 법은 공법이다 → 그런데 헌법은 공법이다 →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고구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기본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정치공동체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국가최고법규범이다.⁴¹⁾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윤곽 또는 기본적인 틀은 헌법이 제시하고 있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법교육은 무엇을 우선 가르쳐야 하겠는가? 개인과 개인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담고 있기 때문에 민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우리는 사회과와 그 일부인 법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인가?⁴²⁾

② 헌법교육 강화의 필요성

헌법교육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성 함양이라는 법교육의 목표에 입각하여 내용요소를 재조정하고, 여기서 헌법교육의 내용요소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⁴³⁾ 헌법교육은 법교육의 영역에서 민법, 형법, 사회법 등의 법의 종류의 1/n 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③ 지식과 기능, 가치

교과내용은 지식, 기능, 가치를 포함한다. 지식이란 사실, 설명, 원리, 정의 등을 말하며, 기능이란 읽기, 쓰기, 셈하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의사결정하기, 의사소통하기 등을 말한다. 가치란 선악, 참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등

41) 전광석, 앞의 책, 3쪽.

4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전제철, 2005, 93-95쪽.

43)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 제2호, 2006, 85쪽.

86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을 말한다.⁴⁴⁾ 교과내용은 이러한 3요소를 잘 버무려야 한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과 헌법교육은 특히 교과내용학으로서 법학과 헌법학의 지식 전달에 충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요소로서 가치를 전달하여야 한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은 대체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는 교과내용학의 지식 전달에 다소 치중한 느낌이 들고, 특히 이를 구현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교과내용학으로서 법학과 헌법의 헌법학의 지식 전달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교과서는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에 관한 지식은 전달하고 있지만, 기본권에 내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통합교과인 고등학교 사회 과목은 이와 같은 가치교육은 상대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교과내용학의 지식 전달이 지나치게 적어 다른 의미에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확실성의 원리: 현행 교육과정은 정확한 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식으로 구성되는 교육내용은 참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내용은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현행 교육과정은 정확하고 진실한 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필자들이 판단하기에는 교육과정의 차원에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는 일부 교과서는 내용학에 충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③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근대 사회 이전에도 법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법은 왕과 귀족 같은 일부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에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다.

44) 김대현, 앞의 책, 148-149쪽.

그러나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법도 그들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법치주의의 의미는?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실현은 법으로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법으로 권력까지 통제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이상 중학교 사회 1, (주)교학사, 230쪽)

여기서 법치주의의 정의는 맥락상 “법치주의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라고 진술되었어야 한다. 그래야 앞의 법치주의 등장 배경과 뒤의 문장과 호응을 이룬다. 여기서 기술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한 내용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 법률유보의 정의라고 보여진다. 법치주의의 한 내용에 대한 서술이 법치주의의 정의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학의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과서의 내용 오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된다.⁴⁵⁾

(4) 중요성의 원리: 현행 교육과정은 법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45) 이와 관련하여 몇 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교과서를 모두 분석·검토하여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헌재가 제시한 의견을 보면, 일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의견 중 확실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내용으로는 헌법재판을 설명하면서 이를 일반 법원 조직의 일부로 혼동한 점,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면서 위헌 법률 심사 제도를 빠뜨린 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성문헌법과 기본권 보장 문제를 간과한 점, 법교육을 한다면서 권리보다 의무 분위의 설명을 한 점, 준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일화와 ‘악법도 법이다.’라는 어구에 의존한 점 등이다. 이상 허종렬 외, 2009, 7쪽 참고.

8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과내용은 학문 또는 주제에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것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중요성의 원리라 한다. 이에 비추어 현행 교육과정은 법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조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체로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이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법이 왜 필요한지, 도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도덕의 기능이 무엇인지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왜 도덕이 아닌 법이 점점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지 이해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적당하지 않지만, 대체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도덕과는 무관하더라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약속을 담고 있으므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득력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교육과 헌법교육에서 핵심개념인 법과 권리, 의무, 권한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시민성 함양이라는 가치 교육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현행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한편, 통합교과인 고등학교 사회를 보면, 통합교과에서 법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제1영역 “사회를 바라보는 창”에서 “개인 이해”라는 단원에서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며,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또한 제2영역 “공정성과 삶의 질”에서 “삶의 질과 복지”라는 단원에서는 이러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원리가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와 더불어 우리 헌법의 3대 기본원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영역 “환경변화와 인간”에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라는 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기본적인지 않은 권리였던 것이 새롭게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가 되었지

만(실질적 기본권 정의 충족),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형식적 기본권 정의 미충족)(예를 들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무엇을 법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

법교육과 헌법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2009년에 발표된 유력한 연구⁴⁶⁾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질적인 연구를 한 결론을 참고하면, 헌법교육에서는 기본권의 제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개념, 통치원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참정권 등이 교과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여기서 특이한 점은 헌법의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서 기본권론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총론에서 헌법의 기본원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상대적으로 통치구조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도 대체로 이에 동의한다. 헌법교육에서 반드시 교과내용으로 포섭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가치는 기본권에 내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함양하는 것,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 사회영역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리에 내재한 자율성, 참여성, 비판적 복종성, 연대성이라는 가치를 함양하는 것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⁴⁸⁾

한편 통치구조론은 국회,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세세한 내용까지 아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보인다.⁴⁹⁾ 그러나 그 결과 이를 정치교육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적어도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치에 대한 균형감각을 잃을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이

46) 곽한영,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2009, 1-28쪽.

47) 곽한영, 앞의 글, 9-10쪽.

48)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9) 곽한영, 앞의 글, 11쪽.

다. 또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정치원리를 넘어 생활원리로 이해하는 태도는 현행 교과서에 매우 중요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6) 흥미의 원리: 현행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를 만족하고 있는가?

학생의 흥미는 교육내용 선정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거나 낮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현대 교육과정론에서는 교육내용 선정시 학생의 흥미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⁵⁰⁾ 현행 교육과정은 법교육과 헌법교육을 받는 학생의 흥미를 만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체로 이 요소도 만족스럽게 충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법내용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교육영역 내에서의 각종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이른바 교육법의 내용을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고등학교 법과 정치) 등의 단원으로 포섭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의 흥미와 관련하여 법교육에서 교육내용 선정시 의미있는 지적은 판례에 기반한 사례를 통한 법교육의 확대이다.⁵¹⁾ 판례에 기반한 사례를 통한 법교육은 교수-학습과정에서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선정과 조직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법교육과 헌법교육은 체험식 교육도 부재하다. 예를 들어, 지리교육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와 영역을 지도와 지구본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일을 하고,⁵²⁾ 세계지도 및 지구본을 활용하여 세계 각 지역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은 하면서도,⁵³⁾ 헌법교육에서는 우리나라가 성립하면서 한 약속인 헌법의 내용을 헌법전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7) 스코프: 현행 교육과정은 특정한 시점에 학습의 내용과 폭이 적절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스코프(scope)란 특정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가리킨다.⁵⁴⁾

50) 강현석, 현대 교육과정 탐구, 학지사, 2012, 309-310쪽.

51) 예를 들어, 전제철, 2005, 98-99쪽.

52) 교육과정해설 1, 352쪽.

53) 교육과정해설 1, 361쪽.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우리 교육과정은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2학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제목으로 학교 법교육과 헌법교육 내용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 단원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의 원리와 주요 국가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파악하고, 국가 구성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자 설정되었다. 전체 교육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늦은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도 그렇다.⁵⁵⁾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위스콘신주의 법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스콘신주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단계에서도 법교육과 헌법교육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법학에서 기본개념인 ‘권리’와 ‘권한’은 전 과정에서 교육토록 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헌법의 기초를, 5학년에 헌법과 연방 및 주법간의 관계를 가르치도록 구성하고 있다.⁵⁶⁾

(8) 수직적 연계성: 현행 교육과정은 연계성을 잘 갖추고 있는가?

수직적 연계성(vertical articulation)은 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의 연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특정한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리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은 법교육과 헌법교육을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 헌법교육은 너무 단출하다. 반면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 “일상생활과 법”, “인권 보장과 법”, “헌법과 국가기관”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비약이 심하다. 한편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법교육과 헌법교육은 통합교과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과내용학적 지식이 빈약하며, 법과 정치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확대에

54) 김대현, 앞의 책, 175쪽.

55) 박인현, “초등학교 학생들의 법 의식 교육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연구, 제7집, 1995, 117쪽.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 관련 내용의 역사적 개관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허종렬 외,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9 참조.

56) 허종렬, “법교육의 목적과 원리에 관한 미국에서의 이론과 사례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와 교육, 제16집, 1992, 37쪽.

불과하다.

IV. 결론

이 글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법교육과정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것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현황을 개관하였다(Ⅱ). 그리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탐색하였다(Ⅲ).

법교육이란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법과 절차, 법체계를 가르치고, 학생과 일반시민이 이를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고, 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추어 헌법교육이란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즉 학생 또는 일반시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헌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는 달리 규범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정치교육과 구별되며, 구별되어야 한다. 헌법교육 내용 중 일부는 정치교육과 그 대상이 겹치나, 통합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면,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조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론에서 교육내용을 선정하는데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은 타당성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 중요성의 원리, 사회적 유용성의 원리, 인간다운 발달의 원리, 흥미의 원리, 학습가능성의 원리 등이다. 이 글은 현행 법교육과 헌법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위와 같은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오류와 흠결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핵심만을 요약하면, 법교육과 헌법교육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성 함양이라는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목표에 입각하여 내용요소를 재조정하고, 여기서 헌법교육의 내용요소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지식의 전달을 극복하고 이를 통한 가치 전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헌법지식의 전달을 통하여 어떠한 가치를 함

양할 것인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 교육에서 법교육은 법내용학을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가르쳐 ‘꼬마 법학자’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 주제 발표 3 ••

**헌법의 가치와 정신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 수업 실천**

[주제 발표 3]

헌법의 가치와 정신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 수업 실천

이 수 경(서울 휘경공고 교사)

- I. 서론
 - II. 가치교육으로서 헌법교육과 법의식 발달론
 - III. 학교 법교육의 수업 실천 방안
 - I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법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법학교육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는 달리, 사회과에서 다루는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법에 대한 법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전제철, 2010, p.137). 따라서 법교육은 일반인들에게 헌법을 통한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나 원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현철, 2009, p.91). 특히 미국의 경우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은 일반적인 의미의 광의의 법교육(legal education)과 청소년을 위한 법관련교육(law-related education)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김현철, 2010, p.33).

9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미국에서의 법교육은 1950년대까지 헌법교육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기존의 헌법교육에 대한 반성의 결과 헌법적 내용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 미국에서는 구체적 사례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학습할 수 있는 ‘생활 중심의 법교육’이 법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곽한영, 2006, p.4; 김현철, 2009, p.93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이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주로 헌법을 중심으로 한 공법 영역에 치우쳤다는 여러 분석들과 생활법 관련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사법교육(私法教育)이 강조되었다(전제철, 2006, pp.86-87).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주도로 학교법교육 이외의 시민법교육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정부와 법교육 전문가들이 수립한 전략은 미국과 같은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법은 낯선 개념이며 어렵고 접근하기 싫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쉽게 접근하고 친근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법을 활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즉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은 시작으로서는 필요한 방식이었다(김현철, 2009, p.93-94).

법교육이 정치교육으로부터 분리를 주장하면서 헌법교육이 강조되었고, 학습자의 법의식 발달론에 따라 법교육의 내용요소를 배열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았다(오연주(1998); 곽한영(2009); 김현철(2009) 등). 또한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고 법무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 교육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생활법 교육 사례(박용조(2009); 김자영(2010); 이대성(2011) 등)나 우리나라에서 실천 중심의 법교육 방안에 관련된 연구(전제철(2008); 이동희(2011); 정상우(2011) 등)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어 온 연구를 종합하여 학습자의 법의식 발달단계에 맞게 법교육 수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가치교육으로서 헌법교육과 법의식 발달론

1.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청소년 잡지인 '밥 매거진'에서 2005년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법의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7.3%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누가 법을 가장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치인(57.1%)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9.0%), 기업가(7.4%)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식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법의식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학교 교육은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 정도에 적합한 법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정음, 2011, pp.894-895).

1) 가치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의 필요성

우리가 운영하는 법체계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법체계가 아닌 서구의 법체계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의식은 수입한 법체계의 운영원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상당부분 우리의 법의식은 동양 고유의 법의식에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즉, 우리가 수입한 법체계는 서구 시민혁명을 거치며 만들어진 근대법체계이며, 그것이 갖는 중요한 함의는 결국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이성적인 법에 의한 정당하나 지배라는 맥락과 관련된다. 그러나 동양의 법관념은 '통치자 위의 법'이 아니라 '통치자의 법'에 더 가까운 면을 가진다. 서구의 이성법 관념이 정당한 법과 정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동양의 법관념은 그보다는 통치의 효율과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게 된다(김현철, 2009, p.94).

결국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우리가 수입한 법체계를 움직이는 이면의 가치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혼재되고 혼란한 우리의 법의식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생활법교육으

100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로 시작한 법교육은 궁극적으로 가치교육, 원리교육으로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헌법교육은 단순히 민법교육, 형법교육 등과 병렬로 놓을 수 있는 법교육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그 자체 근대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의 체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치교육 혹은 원리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생각할 때 헌법교육은 최적의 분야가 될 수 있는 것이다(김현철, 2009, p.95).

법교육이 지식적 차원에서 개개의 법률 조항이나 사실관계를 많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고와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시민성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전제한다면, 헌법교육은 모든 실정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지향, 원칙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교육의 가장 핵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곽한영, 2009, p.2).

2) 헌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

헌법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질서는 결코 가치중립적이거나 가치 초월적 질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와 평등 등과 같은 인간존중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지속적이고 불가변의 질서로 정착시킨 적극적인 가치질서라는 것이다. 일국의 최고 법규범으로서 헌법은 법률에 대한 우위를 지닐 뿐 아니라 정치를 구속한다(전제철, 2008, p.191).

지식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서로서로 또 자연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 시점에서의 '지식'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사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심 또는 불확실성에서 시작한다. 지식이 통달이나 소유된 것을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사고는 탐구, 탐색, 추구의 태도를 나타낸다. 지식의 성장과 사고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법교육이 바로 사고의 상호작용론을 법교육 수업에 도입하는 것이다(이동희, 2011, p.347-348).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지식교육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교육은 헌법전(code of constitutional law)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여러 헌법적 원리들은 중요한 주제이며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지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헌법적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헌법적인 의미에서 가치를 습득하고 법의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김현철, 2009, p.95).

헌법전을 넘어서 가르쳐야 할 헌법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의 역사적 함의, 즉 역사적 의미의 헌법이다. 헌법은 그 본질상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생한 것이고, 그 본질상 역동적인 것이다. 둘째,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에 대한 교육이다. 근대 이후 정치의 문제는 민주정치라는 방식이 대표제와 결합하여 다수의 결정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논리로 정착된다. 이 때 늘 대표되지 못하는 소수가 문제가 된다. 대표되지 못하는 소수가 정치의 역동성 속에서 때로는 다수로 변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과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정치는 그 나름의 균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만일 그런 가능성과 환경이 없다면, 정치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법치이다. 즉, 법은 정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며, 소수의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법치의 본질은 오히려 다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삶의 관점에서 헌법을 성찰해 보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을 매개로 공동체의 비판적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시민임을 즉 공동체의 일원임을 성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서로 다른 개성과 선호와 이익을 가진 각자가 공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성찰해야 한다. 그런 공존을 위한 가치, 관용의 의미 등은 헌법교육을 통하여 가장 잘 교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현철, 2009, pp.96-98).

10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헌법교육은 크게 헌법학적 지식의 전달 교육 차원과 헌법의 여러 원리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헌법의식 함양 교육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헌법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공동체의 약속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구제수단 등을 이해하는 권리보장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대성, 2011, p.287).

2. 법의식 발달론

Fox 등은 법교육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직선적 위협형(Scared Straight Approach), 이습우화형(Empero's Clothes Approach), 참여학습형(Participatory LRE)을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직선적 위협형은 학습자에게 학습경험을 제공할 때,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겪게 될 고통이나 부정적인 결과 위주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준법을 '강요'한다.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에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이습우화형은 사회 구성원의 준법의식이 잘 발휘될 때 경험하게 될 이상적인 결과 위주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준법을 '기대'한다. 경찰, 법정, 교도소와 같은 법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이상적인 기능이 가르쳐지며, 규칙과 법의 신성함이 강조된다. 이 접근법은 법체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맹목적인 신뢰와 존경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참여학습형은 준법행위와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공존하는 현실 사례를 직접 학습 '경험'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이를 반성적으로 탐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준법의 필요성을 깨닫게한다. 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의 원리와 시민으로서의 행동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Fox, 1997, pp.16-20; 황미영, 2009, p.136).

Tapp & Levine의 법 발달론은 학생이 '법복종적 관점'에서 '법유지적 관점'으로 '법유지적 관점'에서 '법제정적 관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 10세 이전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규칙-복종의 단계에 머물

러 있으며 대부분의 10대 청소년들은 규칙-유지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규칙-형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러한 3가지 규칙에 대한 인지구조의 형성을 순차성이 있는 발달의 과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인지발달론적 입장을 따랐다(Tapp & Levine, 1977, pp.93-102; 전제철, 2005, pp.97-98 재인용). 중학생은 ‘법유지적 관점’과 ‘법 제정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고등학생의 경우는 ‘법제정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법 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효과적인 법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학년으로 갈수록 법 제정적 관점에서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내용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오연주, 1998, p.32; 전제철, 2005, pp.98 재인용).

법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므로 이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되, 학습자의 학습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는 곧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정의 정치 내용 요소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전제철, 2010, p.137). 또한 법교육에서 법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지구조를 자극할 수 있는 경험은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우리나라 아동의 법의식 발달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을 전제로 해야 한다(오연주, 1998, pp.205-206).

III. 학교 법교육의 수업 실천 방안

1. 미국의 법교육 수업 실천 사례

1) 연극

시카고의 Cook 카운티 순회법원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들과 연극들을 만드는 공보실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연극이 법교육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최근 상연 작품 중의 하나인 “The Kingdom v. Jack Spriggins”은 동화 속 모의 재판을 그리고 있으며, 1989

년 봄에 법원 소속 극단인 the Circuit Court Jesters에 의해 처음 상연되었다. 법원장인 Harry Comerford에 따르면, 그 공연은 아이들에게 법원은 그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에야 법원의 체계에 대해 알아가기 때문에 사법 체계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보실의 이번 기획이 젊은 사람들이 법원에 대해 좀 더 좋은 인상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화 ‘잭과 콩나무(Jack and the Beanstalk)’에서 따온 “The Kingdom v. Jack Spriggins”는 Jack을 18세의 홀어머니 밑에 사는 가난한 아이로 그린다. 그는 소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가는데, 소를 팔지 않고 나중에 콩나무로 자라는 한 줌의 마법의 콩들과 바꾼다. Jack은 콩나무를 올라가 거인의 노래하는 하프와 황금알을 낳는 마법 거위를 훔치고, 거인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Jack은 사건 후에 납치, 절도와 살인죄로 기소된다. 그의 재판에는 목격자가 있고, 피고측 변호인과 검사가 학생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주장을 펼친다(Mary Neil Crosby, 김자영 외, 2010, p.222).

Ohio, Ashland의 Ashland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또다른 혁신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촌극과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었다. 각각의 학군에는 일주일간의 법교육 집중기간이 있다. 시민성 교육과정 팀은 일 년에 두 번씩 연중지침과 단기지침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다. “Uncle Sam's Constitution”에서는, 카운티 위원인 Rick Sowash가 초등학생들에게 가상의 국가를 세워보라고 한다. 그는 학생 각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나타내는 방패를 나눠주고 이에 대해 설명해준다. 1988년 봄에 만들어진 “Vote America”는 미국의 선거체계를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 미국의 선거 절차가 어떤지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정당 별로 나뉘고, 예비선거를 치르며, 후보를 선택하고, 각각의 후보와 정당이 특정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모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이 비디오는 대통령이 나라를 끌어 나가는데 내각의원들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Mary Neil Crosby, 김자영 외, 2010, p.224).

좀 더 높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Cook 카운티 순회법원의 공보실에서는 Project Inside Out을 후원하고 있다. Project Inside Out은 청소년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연구 기획이다. 고등학생들과 재소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Inside Out”은 학생들이 재소자들과 인터뷰한 것에 토대를 둔다. 구조화된 일련의 즉흥극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재소자들의 경험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그들이 받은 느낌, 경험, 젊은 계층에 대한 충고로 정리했다(Mary Neil Crosby, 김자영 외, 2010, p.225).

2) 헌법 제정 캠프

모의 우주 정착지 헌법 제정 캠프는 학생들을 법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또 다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3년 전 시애틀에서 Metropolitan YMCA of Seattle이 진행하는 Today's Constitution and You의 후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2087년 생활이 오늘날과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려 개발되었다. 시애틀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21세기 우주 정착지의 필요성을 논하고 예상된 필요성을 기초로 헌법을 제정한다. Americans on Purpose는 모든 주 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두 번의 주(州) 단위의 모의 헌법 제정 회의를 후원하였다. 학생들은 우주 정착민이 되어 미국 혁명기와 그 이후의 미국 정착민들이 가졌던 고민과 같은 고민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200년 전 영국의 통치 하에 있고 싶어 했던 정착민들과 독립을 원했던 정착민들 사이의 갈등을 모방하여 학생들은 각각 우주 파와 지구 파에 배정받았다. 두 집단으로 나뉜 후, 학생들은 정착지의 음식, 물, 옷 등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착지의 정부와 헌법에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였다. 각 파(派)는 그 후 우주 정착지의 헌법제정 위원회에 보낼 대표들을 뽑았다. 헌법제정 위원회가 열리는 밤에 개최되는 무도회에서 위원회 참가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가졌다(Mary Neil Crosby, 김자영 외, 2010, pp.225-226).

3) 법 마그넷 프로그램

마그넷 프로그램은 법과 법 절차에 주로 초점을 맞춰 각 학년에서 순차적으로 복합적이고 선택적인(동시에 비선택적인) 수업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9-12학년에게 제공되지만, 일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일부는 고등학교 11, 12학년들에게만 제공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법 마그넷 프로그램은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공동체, 학교장, 그리고 지역사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법교육 수업들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해 시작되었다. 미국 교육부 인권국에서는 법 마그넷 프로그램을 “인종적, 민족적,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모두 끌어들이 수 있는 전문화되고 혁신적인 교육적 접근을 제공한다. 학교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것이거나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포함한다. 마그넷 학교는 학교 시스템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거나, 학군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로 부분적으로 설명한다(Paula A. Nessel, 김자영 외, 2010, p.232).

법 마그넷 프로그램은 법교육의 광활한 영역 중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1978년 법교육법은 법교육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법적 지식과 기술, 법적 절차, 법체계, 이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기초적인 원칙과 가치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 내렸다. 법 마그넷 프로그램은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교육과정을 풍요롭게 한다. 거의 모든 법 마그넷 프로그램이 모의재판, 봉사활동과 인턴십을 포함한다. 모의재판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민/형법과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들을 시나리오에 적용하면서 재판을 이끌어간다. 봉사활동은 노숙자 보호소에서의 봉사, 공원 청소, 어린 아이들 지도 등 여러 형태를 띤다. 인턴십(유급과 무급)은 법원, 로펌, 경찰서, 정부기관 등 법률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법원 서류 작성, 기록 유지, 전화 응답, 사무직 등의 일을 한다.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그들은 모의 법정, 직업 체험, 청소년 법정을 실행하고 있다. 모의 법정은, 모의 재판처럼 재판을 실연하는 것을 수반하나, 배심원단이 없는 항소를 처리한다. 직업 체험은 학생들에게 관련 직업의 일과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 법정은 학교 기반 또는 지역사회 기반의 법정으로,

비행청소년들이 또래 학생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해 선고를 받게 된다. 변호사, 집행관, 법원 서기, 판사들도 어린 학생들이 맡는다. 이밖에 법원을 포함하여 법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법 마그넷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다른 특별한 구성들로는 토론, 모의 국회, close up(지역/주/연방 정부 기관들 방문/연구),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대 간 교육 등이 있다(Paula A. Nessel, 김자영 외, 2010, pp.222-239).

2. 한국의 법교육 수업 실천 방안

1) 법무부의 학교 법교육

법무부의 학교 법교육은 내용 면에서는 생활법 중심, 방법 면에서는 체험과 참여 중시의 법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법교육 출장강연제’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법교육이다(박용조, 2009, pp.28-29).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면에서 학생자치법정 매뉴얼을 포함하여 총4종의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고,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학생자치법정 운영,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운영해 나갈으로써 학교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터민 법교육 프로그램, 생활법 UCC 경연대회, 시민법률 콘서트, 해피스쿨 시범학교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윤일중, 2008, p.173; 이대성, 2009, p.66 재인용)

법무부가 주도하여 다양한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학교로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양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학생과 교사들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내용, 지속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등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또한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다수의 학생들이 아닌 소수의 학생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 자치 법정, 모의재판, 생활법 경시대회, 법교육 캠프 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법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일부에

10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불과하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정보화와 영상매체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임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이대성, 2009, p.72).

학생자치법정은 1980년대 청소년 비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청소년 법정(Teen court)을 2006년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고안하여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조사·변호·판결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학교 내의 징계 처리과정의 일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대성, 2010, p.80).

모의재판이 가상의 사건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어 대본을 미리 구성하고 이를 시연해 보이는 것이라면, 학생자치법정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적절히 투입하면서 법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학생자치법정은 모의재판보다 실제 사건을 다루는 열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상 사건을 다루는 모의재판보다는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의 책임의식과 능동적인 참여능력을 기를 수 있다(한아름, 2009, p.86; 이대성, 2010, p.80 재인용).

2) 교과 활동에서의 법교육 방안

법교육은 학습자에게 기존의 법률을 가르쳐주고, 특정 사례를 제시한 후 미리 배운 법률 내용을 통해 해결해 보도록 하는 학습과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과정의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해보고 우리 사회 문제를 고민해 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강은영 외, 2011, p.174).

법학교육이 법적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범조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라면, 법교육은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과정을 신뢰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문 범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는 달리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할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법 태도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사례중심 법교육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강은영 외, 2011, p.175).

① 입법절차를 원용한 법교육 수업 모형

법교육 교수학습 모형에 입법절차를 원용하여 3단계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례 탐색·실태 조사 → 해결 방안 모색 및 법안 만들기 → 평가 및 현 제도와의 비교’이다. 1단계인 ‘사례 탐색·실태 조사를 통한 사례 구성’ 단계는 학습자가 생활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경험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2단계 ‘해결 방안 모색 및 법안 만들기’에서 학습자는 조별로 구성한 이야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법제도를 만들어 보게 된다.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두 가지 이익이 서로 상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충돌되는 이익을 조절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보는 가운데 융통성과 독창성이라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가치가 여러 가지이고,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소중함 등 사회의 기본적 가치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평가 및 현 제도와의 비교’ 단계는 학습자가 문제가 된 사례를 해결하는 현실 제도들에 대해 학습하고, 스스로 제시한 해결 방안과 비교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해결하려했던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들을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기대하는 학습효과는 학습자가 생각한 해결 방안과 현 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사회제도의 형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형성되었음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습자가 스스로 제시해 본 해결 방안과 현 제도를 비교해보면서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면 사회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제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점이 발견된다면 현실 사회제도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강은영 외, 2011, pp.180-183).

② 법교육 측면에서 본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모형

논쟁문제 수업모형이 사회과에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를 통해 개념 형성과 가치판단, 비판적 사고력 등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논쟁문제 수업모형이 윤리-법률 모형(ethical-legal model) 또는 법리모형(jurisprudential model)이라고도 불리는데서 알 수 있듯이, 논쟁문제 수업에서 논쟁을 해결해 가는 방식은 법률적 논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전제철, 2008, pp.184-185).

사형제 찬반의 논쟁, 안락사 또는 존엄사 찬밥의 논쟁, 낙태 찬반의 논쟁, 간통죄 폐지의 찬반 논쟁,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태아의 성감별 제한에 대한 논쟁 등 사회적 논쟁문제 수업모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헌법에서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쟁문제 수업모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가치갈등의 해결 문제는 인간 존중이라는 사회의 기본가치, 헌법에 제시된 여러 가지 민주적 원리, 가치의 위계적 차이, 가치의 보편성 구체성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바, 논쟁문제 수업모형이 법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교육의 측면에서 재구성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전제철, 2008, p.185).

3) 교과외 활동에서의 법교육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은 헌법교육이든 생활법교육이든 어떠한 범영역이든 간에 학생들의 사고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해결 방법에서 법적인 사고를 유도하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 과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성 요소를 법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 공정, 질서, 책임, 약속, 정직 등의 인성 요소를 법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사례 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인성적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법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 법생활에 있어서 규범의 준수도 이러한 인성 요소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정상우, 2011, p.58-59).

①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이다. 자율활동은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구분된다. 자치활동은 학생회 활동은 정치 영역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헌법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각 학급에서 교실헌법을 작성할 수도 있다. 학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고 규범을 만드는 작업이 하나의 법교육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사활동 시간을 이용해서는 생활법경시대회, 법캠프, 생활법 연수 프로그램, 법체험관 등 참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정상우, 2011, pp.59-60). 특색 수업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전교생에게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을 마련하면, 강당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법교육 강연을 실시한다면, 일년 동안 체계적인 법교육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으므로, 자율활동 시간을 잘 운영하는 것도 법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장 유용하게 채택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치법정, 모의재판, 모의국회 등이다. 실제 사례들을 자신의 창의인성교육 방식에 따라 법적 인식 능력과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혁 외, 2007; 정상우, 2011, p.60-61 재인용). 모의국회도 정치교육 또는 헌법교육의 하나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 현실에 따라 필요한 정책들을 국민의 대표들이 ‘약속’을 통하여 ‘법률’로 ‘디자인’하는 과정은 하나의 중요한 법교육이 된다(정상우, 2011, p.61). 동아리 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되므로 좀더 내용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나 전체 학생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만이 법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될 수 있다.

③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된

112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인격을 함양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봉사활동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법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지식 습득의 범주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사회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공평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해하며 상호 신뢰와 경쟁, 민주적 합의 과정과 법치주의 등 국가구조적 원리를 이해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경찰서(학교 근처 순찰), 학교폭력방지활동, 지방의회 또는 공공기관 민원처리 사무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정상우, 2011, p.62).

교과와 연계한 봉사학습이 가져오는 효과로는 먼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강화시키고 지식을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자원인사와의 접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실에서 특정 자원 제공자가 언급한 주제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은 그 주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제공자가 속한 단체를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그 관심을 더욱 발달시키기 원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봉사학습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며,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갖도록 한다(Williamson, 1997, p.244; 황미영, 2009, p.158 재인용).

봉사활동의 경우,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세워 일주일에 1번 요일을 정해서 전일제로 학급별로 5개 기관으로 분산하여 법교육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기간까지 최소 3년-6년까지 법교육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진로활동 : 법관련 기관 방문

최근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방문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프로그램화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관련 기관을 활용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투어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방문의 목적과 학생들의 수준, 필요한 사항, 질문의 요지들을 미리 알려주어 그에 적

절한 안내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짧은 강의나 강연이 준비되는 경우 지도교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능하면 교과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이나 역할,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보도록 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재판 방청에 있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방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방문 수업 자체가 어려울 경우 또는 방문 전후에 수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변론 동영상이나 영상회의록 등을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다섯째 법 관련 기관의 범위도 사법부 중심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각급 법원과 검찰, 경찰청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법제처, 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 관련 기관의 방문 수업은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학기마다 계획을 세워 다양한 법관련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들 단체가 단체 차원에서 재능기부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학회와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협의하여야 한다(정상우, 2011, p.63).

3.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법교육 실천 방안

송현정(2005) 연구에 따르면, 법교육 전문가, 초·중·고 교사, 법학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초·중·고등학교 법교육의 범위와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준법정신과 권리 존중 태도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준법정신과 기본권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법생활에의 참여와 실천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경우에는 현장견학이나 역할 놀이, 모의재판 등의 교수·학습방법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더 많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법생활에 친숙하게 되며 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고학년

114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수준에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한 토론학습도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례연구법과 토론학습이 다수 제시되었다. 추상적인 법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법적 사례 제시를 통해 학생들이 법에 흥미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직접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직접 법을 만들어 보는 활동 등을 통해 자신들이 법생활에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타 개념학습, 탐구학습, 현장견학, 영화나 비디오 시청, 사회참여체험학습 등도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중학교에서는 권리 존중의 가치·태도와 법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함양, 능동적 참여 능력 및 태도 함양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더 심도깊은 사례 또는 판례 연구법과 토론학습이 제안되었다. 고등학교 법교육에서는 재구성된 법적 사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법적 사고 및 법적 문제해결 방안을 기르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종 법률 관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의재판을 통해 절차에 따른 주장과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판결 과정을 연습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을 습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법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과 능동적 참여 능력 및 태도 함양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송현정, 2005, pp.165-169).

지금까지의 연구되어 온 사례를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법교육 실천 방안

법의식 발달 수준	학교급	교과 활동	교과외 활동
전인습수준 (규칙복종적 관점)	초등학교 저학년	직선적 위협형	체험학습(연극) 일상생활 속 보상-처벌 통 한 법교육
	초등학교 고학년	이습우화형	현장 견학, 역할놀이

<p>인습수준 (규칙유지적 관점)</p>	<p>중학교</p>	<p>참여학습형, 사례연구법, 내러티브 전략 활용, 논쟁문제 수업 모형</p>	<p>현장 견학(입법부) 모의재판</p>
<p>후인습수준 (규칙제정적 관점)</p>	<p>고등학교</p>	<p>판례연구법, 입법절차를 원 용한 법교육 수 업모형, 한자를 활용한 개념학습</p>	<p>봉사활동(마그넷 프로그 램), 헌법 제정 캠프 학생자치법정</p>

원래 법의식 발달 수준으로 보면 고등학생까지는 인습수준에 해당되나 그 다음 단계까지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사고의 상호작용이 자극을 받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각 다음 단계까지 지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고등학교급에서 인습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중학교 때의 경험을 토대로 후인습수준이 규칙제정적 관점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활동과 교과외 활동을 배열하였다.

교과외 활동의 경우 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법교육과 헌법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교과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장 견학의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대법원을, 중학교의 경우에는 국회를, 고등학교의 경우 헌법재판소를 견학하면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기관을 견학할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특색 시간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여 활용하면 법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급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경우 역할놀이로 법교육을 체험한다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모의재판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연계적인 법교육 실천방법이 필요하다.

IV. 결론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과 법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과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개발할 교육적 기회를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법 태도를 기르는 한편, 공동체 생활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황미영, 2009, p.134).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의 법의식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 활동과 교과외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왔으므로 이것을 종합하고, 학습자들의 법의식 발달 단계에 맞게 재배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제 교과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적용하여,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초·중·고등학교 교과 시간에 어떤 방법과 어떤 수준까지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교과외 활동에서는 교과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학교급별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한계이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 문헌]

- 강은영·정상우(2011).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수업 모형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pp.169-191.
- 곽한영(2006). '한국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법교육연구 1(1).
- 곽한영(2009). '헌법교육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법교육연구 4(1). pp.01-28.
- 김다현(2008),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교육의 본질', 법교육연구 3(1), pp.29-48.
- 김현철(2009).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4(1), pp.89-101.
- 김현철(2010). '국민 법의식의 변화와 법교육', 저스티스 통권 121호, pp.32-43.
- 박성혁·곽한영(2007). 「학생자치법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 박용조(2009).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사회과교육연구 16(2), pp.13-39.
- 송현정(2005). '사회과 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37(3), pp.147-175.
- 신정음(2011). '법교육과 법의식 발달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15(4), pp.893-910.
- 오연주(1998). '사회과 법단원의 법발달론적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5, pp.199-222.
- 이동희(2011). '지식과 사고의 성장을 위한 법교육 수업이론과 방법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2(3), pp.317-368.
- 이대성(2009).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 법교육 실천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16(3), pp. 63-75.
- 이대성(2010).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의 실천 가능성', 법교육연구 5(2), pp.75-103.
- 이대성(2011). '미국 헌법교육 동향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2(3), pp.283-316.

118 ·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 이대호(2012). '한자 학습이 법률용어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정(2012). '내러티브 전략을 활용한 법교육 교재 개발의 가능성', 미국헌법연구 23(1), pp.123-164.
- 전제철(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37(2).
- 전제철(2006).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2), pp.85-121.
- 전제철(2008). '법교육의 측면에서 본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모형', 사회과교육 47(4), pp.183-203.
- 전제철(2010). '사회과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법 교육 영역의 설계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7(4), pp.121-143.
- 정상우(2011).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4(2), pp.53-72.
- 한아름(2009).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2), pp.79-115.
- 허종렬 · 박형근 · 고영은(2010). '사회과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0(2), pp.47-65.
- 황미영(2009). '참여학습형 법교육 방법으로서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4(2), pp.133-161.
- Mary Neil Crosby. 김자영 · 유예나(역)(2010). '법교육에 관한 참신한 접근 법 검토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획들-', 법교육연구 5(1), pp.221-230.
- Paula A. Nessel. 김자영 · 유예나(역)(2010). '법 마그넷 프로그램', 법교육연구 5(1), pp.231-246.
- Fox, J.W.(1997). 'Three Faces of Law-Related Education: Toward a Clarification of Definition', In Deborah, W., Kevin I. M., James W. F., ed., Law-related Education and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 Ltd., pp.16-27.

Tapp,J.L., & Levine,F.J.(1977). 'Law, Justice and the individual in Societ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Williamson(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the future: recommendations to sustain and enhance the momentum, In Deborah, W., Kevin I. M., James W. F., ed.,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 Ltd., pp. 247-258.

2013 춘계(통산 15차) 정기 학술 발표회 자료집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3년 6월 1일 인쇄

2013년 6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발행자 / 허 종 열

편집인 / 이 대 성, 조 진 우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E-mail: lawedu2008@paran.com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가람문화사

Tel: 02-873-2362
